



**MINIMUM  
STANDARDS  
FOR CAMP  
MANAGEMENT**



# 캠프 관리를 위한 최소 기준

2021 개정판

## 『캠프 관리를 위한 최소기준』 한국어 번역본

본 번역본은 미국 국제개발처(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산하 인도지원국(Bureau for Humanitarian Assistance)의 지원으로 국제이주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한국대표부가 번역 및 발간하였습니다.





---

# 목차

|   |     |
|---|-----|
| <b>캠프 관리를 위한 최소기준</b> .....             | v   |
| 캠프 관리를 위한 최소기준의 대상 독자는? .....           | vi  |
| 최소기준의 구조 .....                          | vii |
| 감사의 말 .....                             | x   |
| <b>도입</b> .....                         | 2   |
| 누가 임시 현장에 체류하는가? .....                  | 2   |
| 현장 관리란? .....                           | 4   |
| 현장 관리가 필요한 이유는? .....                   | 4   |
| 최소기준이 적용되는 현장은? .....                   | 5   |
| 인도주의 현장, 인도주의 원칙, 보호원칙 .....            | 8   |
| 최후의 수단으로서의 캠프 .....                     | 10  |
| 최후의 수단 제공 기관 .....                      | 11  |
| <b>1. 현장 관리 정책 및 역량</b> .....           | 14  |
| <b>2. 커뮤니티 참여 및 대표</b> .....            | 24  |
| <b>3. 현장 환경</b> .....                   | 36  |
| <b>4. 현장 서비스 조정 및 모니터링</b> .....        | 44  |
| <b>5. 철수 및 이전</b> .....                 | 52  |
| <b>부록1-장애를 포괄하기 위한 모니터링 체크리스트</b> ..... | 60  |
| 현장 관리 역량 및 식별 .....                     | 60  |
| 커뮤니티 참여 및 대표 .....                      | 61  |
| 현장 환경 .....                             | 63  |
| 현장 서비스 조정 및 모니터링 .....                  | 64  |
| 철수 및 이전 .....                           | 65  |
| <b>참고문헌 및 추가 자료</b> .....               | 67  |
| <b>약어</b> .....                         | 70  |
| <b>색인</b> .....                         | 71  |



# 캠프 관리를 위한 최소기준

인도적 위기 상황에서는 캠프 및 캠프 유사환경이 국내이재이주민(Internally Displaced Persons, IDPs)과 난민이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장소인 경우가 많다.

『**캠프 관리를 위한 최소기준**』은 여러 인도적 지원 분야와 기관 간의 계획 수립 및 조정뿐만 아니라 현장 내부에서의 유의미한 참여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활동을 담고 있다. 이는 인도주의 환경에서 매일 활동하는 모든 현장 관리 주체의 역할을 규정하고 인도적 지원 활동이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질적 기준을 설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 최소기준은 ‘캠프 관리를 위한 최소기준’으로 불리지만 이재이주민이 쉼터와 보호 및 기타 지원을 필요로 하는 모든 상황에 적용되며, 구체적인 캠프 상황을 가리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장(site)’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최소기준은 **모든 이재이주민의 권리를 존중하고 그들의 존엄을 지키는 방식으로 필요를 충족해 주어야 한다**는 기본적인 신념에 바탕을 두고 있다.

현장 관리 기관(Site Management Agency, SMA)이 수행한 인도적 지원 활동의 질을 평가하기 위한 최소기준 수립의 필요성은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되었다. 2002년 핵심 현장 관리 기관(SMA)들과 현장 실무자들은 공통의 기준과 정책에 대한 합의가 부족했고 지원 및 보호의 수준이 불충분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그들이 캠프 관리에 관한 공통의 지침 및 도구가 필요함을 인정한 결과로 2004년에 『**캠프 관리 툴킷(Camp Management Toolkit)**』이 출간되었다. 오늘날 이 툴킷은 현장 관리와 관련된 포괄적인 지식과 교훈을 담은 문헌으로 널리 인정받고 있다. 그 후 다른 지침과 핸드북도 출간되었으며, 특히 2010년 유엔 난민기구(UNHCR)가 출간한 『**Handbook for the Protection of Internally Displaced Persons**』가 주목할 만하다. 보다 최근에는 현장 실무자들의 요구에 더해 글로벌 클러스터들이 효과적인 공통의 정책 프레임워크를 개발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삼으면서 캠프 조정 및 캠프 관리(Camp Coordination and Camp Management, CCCM) 클러스터가 2016년 분야별 최소기준을 수립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캠프 관리를 위한 최소기준은 현장에서의 광범위한 협의 및 온라인 설문조사, 표적집단 토론, 탁상 검토(desk reviews), 전문가 조언 등을 통해 나온 결과물이다. 이재이주민, 주요 현장 운영 파트너(operational partners), 정부 측 파트너 모두 적극적으로 협의에 참여하여 최소기준 마련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했다. 본 최소기준은 캠프 및 기타 이재이주 환경이 인도적 대응이라는 보다 광범위한 생태계의 일부라는 인식 하에 『**캠프 관리 툴킷**』, 『**Handbook for the Protection of Internally Displaced Persons**』와 같은 캠프 조정 및 캠프 관리(CCCM) 기술 분야의 자료 및 『**Sphere 핸드북(The Sphere Handbook)**』을 포함하여 인도적 기준 파트너십(Humanitarian Standards Partnerships)이 출간한 핵심 자료 등의 기존 지침서들을 참고 자료로 삼는다. 이를 통해 최소기준은 이재이주 환경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CCCM 전문가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것을 알려 주고 CCCM 분야를 처음 접할 수 있는 현장 관리자들을 지원한다.



## 캠프 관리를 위한 최소기준의 대상 독자는?

본 최소기준의 주요 대상 독자는 매일 이재이주 현장에서 활동하는 직원인 **현장 관리자와 현장 관리팀의 구성원**이다.

또한 최소기준은 이재이주민이 생활하는 환경에서 그들과 함께 협력하는 사람들, 즉 이재이주민과 매일 직접적인 관계를 맺으며 일하는 활동가, 계획 수립 담당자와 정책 입안자, 분야별 전문가, 조정관, 공여자, 학자를 비롯해 옹호 활동과 언론 또는 의사소통을 담당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상황에 맞게 본 최소기준을 적용하려면 현장 관리를 위한 다양한 조직적 접근법이 필요할 수도 있다. 본 최소기준은 이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모든 규모의 다양한 현장 팀 구조를 아울러 지칭하기 위해 포괄적인 용어인 '현장 관리 기관(SMA)'을 사용한다. SMA에는 다음과 같은 기관이 포함된다.

- 이재이주 커뮤니티의 거버넌스 구조(governance structure)를 조직하고 인도주의 기관 또는 기타 기관(예: 민간 기관 및 현지 당국)이 제공하는 지원 및 서비스를 조정하는 전통적 캠프 관리 기관
- 캠프 관리 기관이 상주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 곳곳에 흩어져 있고 덜 구조화된 수많은 현장에 맞춤형 CCCM으로 대응하는 이동식 캠프 관리 기관. 이러한 기관은 해당 현장에 거주하는 이재이주민과 긴밀히 협력하여 그들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한 다분야 대응을 조직한다. 그리고 주로 서로 다른 규모로 분산된 위치에 마련된 공용 현장(communal sites)을 관리하고 조정하는 일에 집중하며, 현장 거주민들이 CCCM 대응을 관리하는 일에 참여하게 만든다. 필요할 경우 이동식 현장 관리 기관은 지역 기반의 조정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거주 지역과 무관하게 보다 광범위한 인구를 대상으로 활동할 수도 있다.
- 추가 지원이 필요한 국가, 주, 지정된 정부 기관 또는 현지 기관에 제공되는 현장 관리 지원. 현장 관리 지원팀은 지정된 현장 관리 기관의 역량을 강화하여 그들이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러한 지원에는 매일매일 이루어지는 조정을 지원하고 인도적 지원 및 서비스 제공을 모니터링하거나, 적절한 도구를 제공하는 것 등을 통해 교육과 기량 강화를 돕거나, 적절한 장비를 지원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다.

## 최소기준의 구조

캠프 관리를 위한 최소기준은 다른 인도주의 기준과 유사한 구조를 가지며, 독자들이 보편적인 기준(최소기준)과 그러한 기준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일련의 핵심 활동, 핵심 지표 및 세부 지침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 **최소기준**은 이재이주민의 권리에 관한 원칙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는 본질적으로 일반적이고도 질적인 차원의 기준으로, 그 어떤 인도적 위기 상황에서도 충족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조건을 제시한다.
- **핵심 활동**은 최소기준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실용적인 단계들을 개괄적으로 보여준다. 핵심 활동은 일종의 제안이며, 어떤 상황에서는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실무자들은 주어진 상황에 가장 적절한 활동을 선택해야 한다.
- **핵심 지표**는 최소기준이 충족되었는지를 측정하는 지표에 해당한다. 핵심 지표는 각 기준 및 인도적 대응의 제반 과정과 사업 결과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준다. 최소한의 양적 요구사항은 지표를 충족시켰다고 볼 수 있는 최저 수준을 가리키며, 각 분야에서 합의한 경우에만 지표에 포함된다.
- **세부 지침**은 다른 기준, 지침, 도구 등 상호 참고자료를 비롯해, 핵심 활동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추가적인 정보를 제시한다.

## 핵심 지표의 활용

핵심 지표는 기준이 충족되었는지를 측정하는 방법 중 하나이다. 지표는 기준과는 다르기 때문에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기준은 보편적인 반면, 핵심 지표는 핵심 활동과 마찬가지로 주어진 상황 및 대응의 단계를 감안하여 고려해야 한다.

핵심 지표는 다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 **과정 지표(process indicator)**는 최소 요구사항이 충족되었는지 확인하는 지표이다.
- **발전 지표(progress indicator)**는 기준의 충족 과정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측정 단위를 제시한다. 발전 지표는 기초선(baseline)을 결정하고, 파트너 및 이해관계자들과 목표를 설정하며, 목표 달성을 위한 변화들을 모니터링하는 데 활용되어야 한다.
- **목표 지표(target indicator)**는 기준을 충족시키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정량적인 기준을 대표하는 구체적인 정량 목표이다. 이와 같은 목표는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달성해야 한다.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할수록 사업 전반에 해가 되기 때문이다.

최소기준은 모든 영역(domain)에서 양적 지표와 질적 지표를 모두 활용한다. 만족 지표 또는 인지 지표 같은 질적 정보를 판단하는 지표를 포함하는 경우는 특히 현장 인구에 대한 책무성을 강화하고 SMA가 프로그램 변화를 이끌고 발전시켜 최소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다.



최소한 성별, 연령, 장애 여부에 따라 세분화된 데이터는 프로그램 관리자와 의사결정자가 서비스 제공, 처치, 서비스 결과를 심도 있게 검토할 수 있게 해 준다.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세분화가 필요할 수도 있다.

## ‘최소’의 의미와 최소기준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에 발생하는 결과는?

캠프 관리를 위한 최소기준은 모든 이재이주민의 권리를 존중하고 그들의 존엄을 지키는 방식으로 필요를 충족해 주어야 한다는 기본적인 신념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러한 최소기준은 말 그대로 최소한의 기준으로 변동 없이 유지된다. 그러나 핵심 활동과 지표는 그것이 적용되는 상황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이재이주 커뮤니티나 수용 커뮤니티를 포함한 현장 거주 인구의 의견을 바탕으로 조정해야 한다. 또한 현장 운영 주기에 걸쳐 상황이 변하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에 따라 핵심 활동과 지표의 적절성(appropriateness)을 검토해야 한다.

SMA는 항상 최소기준 그 이상의 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가능한 한 많은 집단과 그 집단들이 가진 필요를 다루어야 한다. 인도적 지원이 모두에게 똑같은 영향을 미치는 중립적인 활동이라고 가정할 수는 없다. 지원이 제공되는 상황과 방식은 피해인구의 인권 및 필요가 존중되고 충족되는지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점에서 인권에 기반한 접근법은 인도적 지원 활동을 위한 프레임워크와 필수적인 기준을 제공한다.

최소기준이 충족되지 못할 경우, 최소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해 보아야 한다. SMA는 요건 완화에 대해 공통의 합의를 이끌어내고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는 동안 달성하지 못한 최소기준을 보고하는 과정을 주도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는 이재이주 인구, 수용 커뮤니티, 현장에서 활동하는 기관, 기타 핵심 이해관계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인도주의 기관은 또한 최소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해당 인구에게 가해지는 부정적인 영향을 평가하고 모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SMA는 인도적 대응에 있어서 이러한 공백을 참고하여 옹호 활동을 벌이고 가능한 한 빨리 지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상황별 최소기준 활용

인도적 대응은 매우 다양한 상황에서 이루어진다. 존엄한 삶에 대한 권리를 뒷받침하기 위해 인도적 대응이 행해지는 환경에 최소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에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요소들이 영향을 미칠 것이다.

- 인도적 대응이 이루어지는 환경
- 인구 간 차이점 및 개인 간 다양성
- 인도적 대응이 이루어지는 방식 및 인도적 대응의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운영 및 물류 현황
- 핵심 용어 정의 및 목표 설정을 비롯해, 서로 다른 상황에 맞는 정확한 기초선 및 지표

문화, 언어, 지원 인력의 역량, 안보, 접근성, 환경조건, 자원은 인도적 대응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인도적 대응이 초래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예측하고 그러한 영향을 억제하는 행동을 취하는 것도 중요하다. 캠프 관리를 위한 최소기준은 인도적 지원의 질과 책무성을 위한 자발적인 규정의 하나로, 인도적 지원 기준의 가능한 한 광범위한 사용 및 공유를 장려하기 위해 제작되었다. 본 핸드북은 '방법론'에 해당하는 지침이 아니며, 사람들이 인도적 위기 상황에서 생존하고 존엄하게 회복하는 데 필요한 최소기준을 기술한 결과물이다. 최소기준을 준수한다고 해서 모든 기준의 핵심 활동을 전부 수행해야 하거나 모든 핵심 지표를 충족시켜야 하는 것은 아니다. 어떤 기관이 어느 정도로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지는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달라지며, 그러한 요인 중 일부는 해당 기관이 통제할 수 있는 영역 밖에 있을 수도 있다. 피해인구에 대한 접근의 제한 또는 정치적·경제적 불안정으로 인해 기준을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도 있을 수 있다. 수용 커뮤니티의 생활 여건으로 최소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어려울 경우 SMA는 커뮤니티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잠재적인 긴장을 완화할 방법을 고려해보아야 한다. 상황에 따라, 국가 당국에서 최소기준보다 높은 수준의 최소 요구사항을 설정할 수도 있다.

## 다른 기준과의 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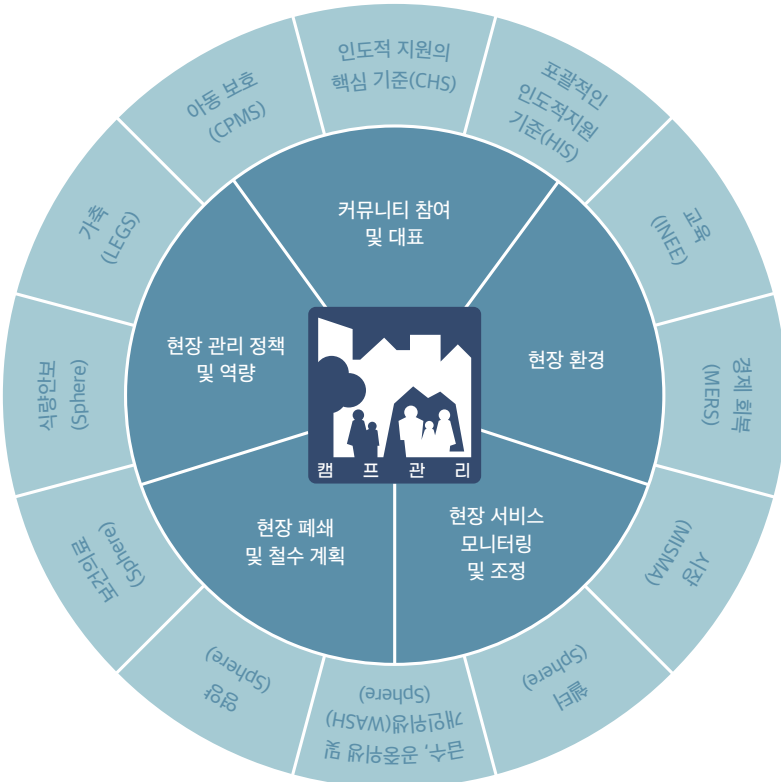
캠프 관리를 위한 최소기준은 존엄하게 살아갈 권리를 지원하는 인도적 지원의 모든 측면을 다루지는 않는다. 이에 파트너 기관들은 본 최소기준과 동일한 철학 및 서약을 바탕으로 몇몇 분야에서 상호보완적인 기준들을 개발해왔다. 이러한 기준들은 Sphere, 인도적 기준 파트너십, 파트너 기관의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 『Sphere 핸드북: 인도주의 현장과 인도적 대응의 최소기준(The Sphere Handbook: Humanitarian Charter and Minimum Standards in Humanitarian Response)』: Sphere 협회
- 『Livestock Emergency Guidelines and Standards(LEGS)』: 비상사태에서의 가축 관리 지침과 기준(LEGS) 프로젝트
- 『Minimum Standards for Child Protection in Humanitarian Action(CPMs)』: 인도적 활동 시 아동 보호를 위한 동맹(Alliance for Child Protection in Humanitarian Action)
- 『교육을 위한 최소기준: 대비, 대응, 회복(Minimum Standards for Education: Preparedness, Response and Recovery)』: 비상사태 시 교육에 관한 기관 간 네트워크(Inter-Agency Network for Education in Emergencies, INEE)
- 『Minimum Economic Recovery Standards(MERS)』: 소기업 교육 및 증진(Small Enterprise Education Promotion, SEEP) 네트워크
- 『Minimum Standard for Market Analysis(MISMA)』: 현금 학습 파트너십(Cash Learning Partnership, CaLP)
- 『노인과 장애인을 포괄하기 위한 인도적 지원 기준(Humanitarian inclusion standards for older people and people with disabilities)』: 고령·장애 컨소시엄(Age and Disability Consortium)

## 감사의 말

캠프 관리 기준 실무 그룹(Camp Management Standards Working Group)은 본 최소기준 개발에 기여한 전 세계 850명 이상의 활동가들에게 감사드립니다.

### 캠프 관리를 위한 최소기준에 대한 보완 기준 (Complementary standards to the Minimum Standards for Camp Management)



출처: Wan Sopphonpanich / IOM 2020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브라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도미니카 공화국,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멕시코, 파나마, 페루, 베네수엘라 등지에서 온라인 화상 회의로 진행한 협의를 비롯해 방글라데시, 이라크, 소말리아, 남수단, 튀르키예 현지에서의 협의는 이재이주 현장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다양성과 구체성을 제대로 반영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이었습니다.

“우리 없이 우리에게 관하여 말하지 말라(nothing about us, without us)”라는 문장은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구호이며, 특히 이재이주 현장에서 생활하며 얻은 직접적인 경험과 최소기준이 현실을 더 잘 반영하게 만들 방법을 공유해 준 남수단과 방글라데시의 이재이주 인구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각국의 CCCM 클러스터/분야별 실무 그룹 또는 기타 인도적 지원 분야에 소속된 구성원으로서 최소기준 수립에 기여하고 필요한 조언을 제공한 다음과 같은 동료들에게도 감사를 표합니다.

|   |   |
|---|---|
| 액트 얼라이언스(ACT Alliance) / 크리스천에이드(Christian Aid), 단처치에이드(DanChurchAid)   | 돈 보스코 가톨릭 교회 (Don Bosco Catholic Church)                |
| 기술 조정 및 개발 기관 (Agency for Technical Cooperation and Development, ACTED) | 엘살바도르 시민 보호 기동대 (El Salvador Civil Protection)          |
| 아드라(Adventist Development and Relief Agency, ADRA)                      | 글로벌 커뮤니티(Global Communities)                            |
| 아포드(Action for Development, AFOD)                                       | 핸드 인 핸드 포 시리아 (Hand in Hand for Syria)                  |
| 아라우카 주 (Arauca Governorate)   | 헬스 링크 남수단 (Health Link South Sudan)                     |
| 아타 릴리프(Ataa Relief)   | 홀드 더 차일드(Hold the Child)                                |
| 바르자니 자선 재단 (Barzani Charity Foundation, BCF)                            | 휴먼 릴리프 재단 (Human Relief Foundation)                     |
| 블루몽(Blumont)  | 인도적 기준 파트너 (Humanitarian Standards Partners , HSP)      |
| 브락(Building Resources Across Communities, BRAC)                         | 임팩트 이니셔티브(IMPACT Initiatives)                           |
| 케어(CARE)  | 부문 간 조정 그룹 (Inter-Sectoral Coordination Group, ISCG)    |
| 카리타스 방글라데시(Caritas Bangladesh)  | 국제이주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IOM)   |
| 카리타스 이라크(Caritas Iraq)  | 인터소스 인도적 지원 기관 (INTERSOS Humanitarian Aid Organization) |

|  |   |
|--|---|
| 카사 델 미그란테 데 살티요<br>(Casa del Migrante de Saltillo)                                       | 쿠르드 자치정부(Kurdistan Regional Government) 공동 위기 조정 센터(Joint Crisis Coordination Center, JECC)             |
| 국제적십자위원회(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ICRC)                                 | 구호 및 개발을 위한 마람 재단(Maram Foundation for Relief and Development)  |
| 인간 개발을 위한 국제 위원회<br>(International Committee for the Development of Peoples, CISP)       | 구호 및 개발을 위한 머시 유에스에이<br>(Mercy-USA for Aid and Development)   |
| 콜롬비아 뉴 호라이즌 재단(Fundación Colombia Nuevos Horizontes)                                     | 인도주의와 개발을 위한 무준(Muzun for Humanitarian and Development)   |
| 쿠파(COOP)<br>- 국제 협력(Cooperazione Internazionale)   | 페루 국립 민방위 연구소<br>(National institute of Civil Defense, INDECI)  |
| 덴마크 난민 위원회(Danish Refugee Council)   | 세이브더칠드런(Save the Children)  |
| 라틴아메리카 적십자   | 스칼라브리니 이주연구센터<br>(Scalabrini Migration Center)  |
| 노르웨이 난민 위원회의 전문위원회<br>(Norwegian Refugee Council-Norwegian Capacity, NORCAP)             | 방글라데시 현장 유지관리 및 엔지니어링 프로젝트(Site Maintenance and Engineering Project, SMEP)                              |
| 노던 프론티어 유스 리그(Northern Frontier Youth League, NoFYL)                                     | 소말리아 젊은 의사 협회(Somali Young Doctors Association, SOYD)   |
| 노르웨이 난민 위원회<br>(Norwegian Refugee Council, NRC)  | 남수단 개발 기구(South Sudan Development Agency, SSUDA)  |
| 유엔 인도주의 업무 조정국(United Nations Office for the Coordination of Humanitarian Affairs, OCHA) | 멕시코 트랜짓 센터: 알베르게 라 사그라다 파밀리아(Transit centre: Albergue La Sagrada Familia)                               |
| 플랜 인터내셔널(Plan International)   | 멕시코 트랜짓 센터: 알베르게 데 미그란테스 에르마노스 엔 엘 카미노<br>(Transit centre: Albergue de Migrantes Hermanos en el Camino) |
| 포인트 기관(POINT Organization)   | 튀르키예적신월사<br>(Türkiye Red Crescent Society)  |
| 카타르 적신월사<br>(Qatar Red Crescent Society)   | 유니세프(UNICEF) (WASH, 아동 보호)  |

|   |  |
|---|--|
| 레드 클래머(Red Clamor)  | 유엔 평화활동국<br>(UN Department of Peace Operations)                    |
| 방글라데시 난민구호송환국장<br>(Refugee Relief and Repatriation<br>Commissioner, RRR)  | 유엔난민기구(UN High Commissioner for<br>Refugees, UNHCR)                |
|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을 위한 비정부기구<br>라틴아메리카 네트워크(Latin American<br>Network of Non-Governmental<br>Organisation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br>and their Families, RIADIS) | 바이올렛 단체(Violet Organization)                                       |
| 이재이주 단체를 위한 니나와주 자원봉사자<br>대표(Representative of Ninewah Voluntary<br>for Displacement Organization, RNVDO)   | 평화와 삶을 위한 여성 개척자<br>(Women Pioneers for Peace and Life ,<br>HINNA) |
| 사이드 자선 연합<br>(Saed Charity Association)   | 세계 식량 계획<br>(World Food Programme, WFP)                            |
| 사마리안퍼스(Samaritan's Purse)   | 유스 액티비티 단체<br>(Youth Activity Organization, YAO)                   |
| 세이브 소말리 위민 앤 칠드런(Save Somali<br>Women and Children , SSWC)  |  |

본 최소기준은 국제이주기구(IOM), 덴마크 난민 위원회(DRC), 유엔난민기구(UNHCR)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았습니다.

본 최소기준의 시험 버전은 소말리아와 시리아에서 활용되었고, 인도네시아 현지 비정부기구(NGOs)의 역량을 구축하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실무 그룹과 협의 및 초안 작성 과정을 조정하고 관리해 준 IOM의 Jennifer Cline Kvernmo와 DRC의 Tom Stork 에게도 감사합니다.

CCCM 전략 자문 그룹(Strategic Advisory Group), Sara Ribeiro Ferro, Erica Karapandi와 David Preux는 초기 초안 작성에 기여하고 폭넓은 견해를 제시해 주었으며, Kit Dyer, 인도적 기준 파트너, 인도적 지원과 보호 전문가 그룹(Professionals in Humanitarian Assistance and Protection, PHAP)은 최종 원고를 완성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래픽 디자인은 휴먼 아틀리에(Human Atelier)의 Livia Mikuelec가 맡아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오늘날 이재이주민이 되어 임시 현장(temporary sites)에서 살고 있는 여성, 남성 및 아동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인도적 지원 활동을 할 때 영감을 주는 난민, 이주자, 망명 신청자가 부디 존엄을 지키고 머지않아 집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 도입

# 도입

## 누가 임시 현장(temporary sites)에 체류하는가?

이재이주 인구 가운데 특정 집단은 특별한 요구 사항을 갖고 있을 수도 있다. 『Sphere 핸드북』 및 다른 인도적 기준 파트너 지침과 마찬가지로, 『캠프 관리를 위한 최소기준』도 핸드북 전반에 걸쳐 ‘인구(people)’라는 용어를 광범위한 의미로 사용한다. ‘인구’는 임시 정착지에 임시로 거주하며 현장 관리자들의 지원을 받는 사람들을 가리키며, 모든 사람은 존엄하게 살아갈 권리를 지닌다. ‘인구’에는 연령, 장애 여부, 국적, 인종, 민족성, 건강 상태, 정치적 신념, 성적 지향, 젠더 정체성, 기타 개인이 자기 자신을 규정하는 특성과 무관하게 모든 여성, 남성, 여아, 남아가 포함된다.

현장 관리 기관(Site Management Agency, SMA)은 현장 수준에서의 조정을 통해 현장에 머무는 모든 사람에게 안전한 환경을 보장할 책임이 있다. 현장의 모든 사람이 동등한 통제권 및 권력과 자원을 갖지는 못할 것이며, 특히 수년간 지속되는 임시 캠프에서는 더욱 그러할 것이다. 개인과 집단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는 현장 운영 주기 내내 서로 다른 역량과 필요 및 취약성을 가질 것이다. 이러한 요소와 다른 요소들은 의도적인 차별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 SMA는 공정성(impartiality)의 원칙을 반영하되, 개개인의 요구와 특히 취약 집단의 요구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협의, 프로그램 설계, 충족되지 않은 필요에 대한 모니터링, 그리고 인도적 지원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임시 정착지 관리의 토대를 이룬다.

| 인구 범주    | 특정 필요가 있는 집단  |
|----------|---|
| 아동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보호자 미동반 및 분리 아동 (Unaccompanied and Separated Children)</li><li>· 군대나 무장단체에 징집된 경험이 있는 아동</li><li>· 아동 가구주</li><li>· 아동 배우자(child spouses)</li><li>· 임신한 여아</li><li>· 젠더기반폭력(Gender-based Violence, GBV) 생존 아동</li></ul> |
| 청소년 및 청년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학교 미등록(Out of school) 및 실업 청소년 및 청년</li><li>· 군대나 무장단체에 징집된 경험이 있는 청소년 및 청년</li></ul>   |

|                       |  |
|-----------------------|--|
| 여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부를 포함한 여성 가구주</li> <li>· 남성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여성</li> <li>· 군대나 무장단체에 징집된 경험이 있는 여성</li> <li>· 젠더기반폭력(GBV) 생존자</li> <li>· 임신부 및 모유수유 중인 여성</li> </ul>  |
| 노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족이나 커뮤니티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노인 또는 18세 미만의 아동을 돌보는 노인</li> </ul>   |
| 질병 또는 트라우마의 영향을 받은 사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족 또는 커뮤니티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환자</li> <li>·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uman Immunodeficiency Virus, HIV)/ 후천성면역결핍증(Acquired Immune Deficiency Syndrome, AIDS)에 걸렸거나 걸릴 위험이 있는 사람</li> <li>· 고문 생존자</li> </ul>   |
| 소수자 집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수 민족(Ethnic and national minorities)</li> <li>· 종교적 소수자</li> <li>· 언어적 소수자</li> <li>· 유목/목축 집단(Nomadic/pastoral groups)</li> <li>·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 인터섹스(Lesbian, gay, bisexual, transgender, intersex, LGBTI)</li> </ul> |
| 남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권리를 박탈당한 청소년 및 청년 남아/성인 남성</li> <li>· 성폭력 생존 남성</li> <li>· 단독 남성 가구주</li> </ul>   |
| 장애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체적 손상을 가진 사람</li> <li>· 감각적 손상을 가진 사람</li> <li>· 심리·사회적 또는 지적 손상을 가진 사람</li> </ul>   |

⊗ 특정 필요가 있는 집단에 인도적 지원과 보호를 제공하는 현장 관리자의 역할과 관련해서는 『캠프 관리 툴킷(Camp Management Toolkit)』 제11장, 『Sphere 핸드북(The Sphere Handbook)』 2018년도 개정판 10~16쪽(국문 번역본 12~18쪽)의 정의 및 읽기 자료를 참고한다.

## 현장 관리란?

현장 관리는 사람들이 이재이주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서비스 제공과 보호 및 인도적 지원을 조정 하고 모니터링하는 것을 가리킨다. 커뮤니티 차원의 거버넌스와 참여적 시스템을 통해 법적 보호 프레임워크와 인도적 지원 최소기준을 적용하는 현장 관리는 기술적인 동시에 사회적인 활동이다. 현장 관리는 공유 환경(communal settings)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와 보호가 국내법 및 국제법, 지침, 합의된 기준에 부합하고, 이재이주가 이루어지는 동안 사람들의 삶의 질과 존엄을 높이며, 지속적인 ('항구적인') 해결책을 지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 문서 전반에 걸쳐 쓰이는 '현장(site)'이라는 용어는 캠프 관리 분야에서 점점 더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계획 캠프(planned camps), 자생 캠프(self-settled camps), 이재민 임시수용시설(collective centres), 등록소(reception) 및 트랜짓 센터(transit centres), 대피 센터를 포함한 캠프 및 캠프 유사환경을 가리킨다. 캠프별 특징에 따른 차이가 일상적인 관리 활동과 인도적 지원 기준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세부 지침에 설명되어 있다. 현장은 서비스, 기반 시설, 자원이 공동으로 공유되고 관리되는 공간이다. 이를 위해 모든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 현장 수준의 효과적인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모든 SMA의 핵심 과제이다.

모든 임시 쉼터 범주에 속하는 캠프는 최후의 수단이자 임시방편이어야 한다. 현장이 구축되면 여러 기관과 당국은 보호를 제공하기 위해 애쓰고, 모든 인도주의 분야에서 생명을 구하는 필수 서비스를 최소기준에 맞게 제공해야 한다.

## 현장 관리가 필요한 이유는?

전담 SMA와 직원이 상주할 경우, 더 예측 가능하고 조정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현장 관리자와 현장 관리 팀원들은 참여를 독려하고, 피해인구에 대한 책무성을 증진하며, 피해인구가 필요로 하는 지원과 인도적 지원 제공자의 프로그램 및 정부 서비스에 관한 최신 정보를 제공하는 동시에 보호 환경(protective environment)을 개선한다. 현장 관리자가 구축한 관리 구조는 피해인구가 커뮤니티를 조직 및 동원하고, 인도적 지원 제공에 기여하며, 자기 자신 및 가족을 위해 고지에 입각한 결정(informed decisions)을 내릴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때가 많다.

현시 당국은 인도적 위기 발생 시 최초 대응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 경우에 따라 현지 당국은 캠프 조정 및 캠프 관리(CCCM) 프레임워크의 세 가지 역할(행정, 조정, 관리)을 전부 맡기도 하고, 중앙 정부가 외부 기관 또는 CCCM 클러스터에 비상사태 대응을 공동 주관할 것을 요청할 수도 있다.

최근 CCCM 분야는 이재이주 인구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된 여러 경향에 주목하고 있다. 일반적인 도시화 경향뿐만 아니라, 다른 요인들도 이재이주 인구가 대안적인 집합 현장

(collective sites)으로 피난을 가거나 비공식 현장 환경을 선호하는 현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한 요인들에는 생계유지를 위해 법적으로 소유하고 활용할 수 있는 토지의 제한, 시장에 대한 접근성 제한, 안보 관련 우려 사항, 대응 전략 등이 포함된다. 수용국 정부(host governments)는 정치적 이유로 공식 캠프를 구축하는 것을 망설일 때가 많은데, 이는 이재이주 인구를 책임져야 한다는 사실을 가시적인 방식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거나 또는 현지인들이 다른 곳에서 받을 수 없는 지원과 서비스를 받기 위해 캠프로 들어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공식적인 계획 캠프를 구축하려면 당국으로부터 적절한 토지권과 예산 및 허가를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복잡한 준비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 모든 요소가 갖춰져 있는 경우는 많지 않다. 게다가 많은 이재이주 인구는 이동의 자유가 제한된 상황과 더불어 시장 및 생계 기회에 대한 접근성 부족 등의 우려 사항 때문에 계획 캠프에서 거주하는 것을 선호하지 않는다. CCCM을 위한 지역기반(area-based) 접근법에 관한 추가 정보는 여기(<https://ccmcluster.org/resources/cccm-cluster-paper-area-based-approaches>)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최소기준이 적용되는 현장은?

최소기준은 계획 또는 자생 캠프(spontaneous camps)(비계획 캠프)에서부터 이재민 임시수용시설, 등록소, 트랜짓 센터, 대피 센터를 비롯해 특정 상황에 한해 캠프 외부 및 지역 기반 접근법에 이르기까지 모든 유형의 이재이주 현장에 적용된다. 사람들은 보통 캠프에 거주하는 인구가 주변 지역으로부터 확실하게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사실상 이러한 경계선은 고정적이지 않으며, 현장 간 이동도 매우 유동적일 수 있다. CCCM 기관은 수용 커뮤니티와 캠프 외부 환경에서 거주하는 이재이주 커뮤니티를 위한 현장 관리 지원 제공에 적극적으로 관여한다. 아래 표는 본 최소 기준이 적용되는 현장의 유형을 보여준다.

|                                      |  |
|--------------------------------------|--|
| <p>계획 캠프</p>                         | <p>계획 캠프는 도시 또는 시골에 위치할 수 있다. 이는 이재이주 인구가 의도적으로 설계된 현장 내에서 거주하는 장소를 가리키며 전담 관리팀을 갖추고 있다. 계획 캠프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는 인도주의 기관 또는 기존의 공공 기반 시설을 통한 물 공급, 식량 배급, 비식량물품 배급, 교육, 보건 의료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서비스는 보통 현장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만 제공된다.</p>  |
| <p>자생 캠프<br/>(self-settled camp)</p> | <p>흔히 가족 또는 친척으로 이루어진 이재이주 집단은 도시 또는 시골에 자발적으로 정착할 수도 있다. 이러한 유형의 캠프 유사환경은 보통 일정 기간 동안 인도적 지원을 받지 않으며, 그 어떤 외부 또는 공식 인도적 지원도 받지 않는 상태로 유지될 수도 있다. 자생 캠프는 보통 사유지에 위치하고 해당 토지의 사용 또는 접근과 관련해 현지인이나 민간 소유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거나 아무런 협상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 특징적이다. 경우에 따라 캠프 관리 기관은 자생 캠프 인근에서 활동하면서 이재이주 인구의 필요에 대해 조사하고, 그들이 인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당 인구를 캠프 관리 구조로 편입시키려 노력하기도 한다.</p>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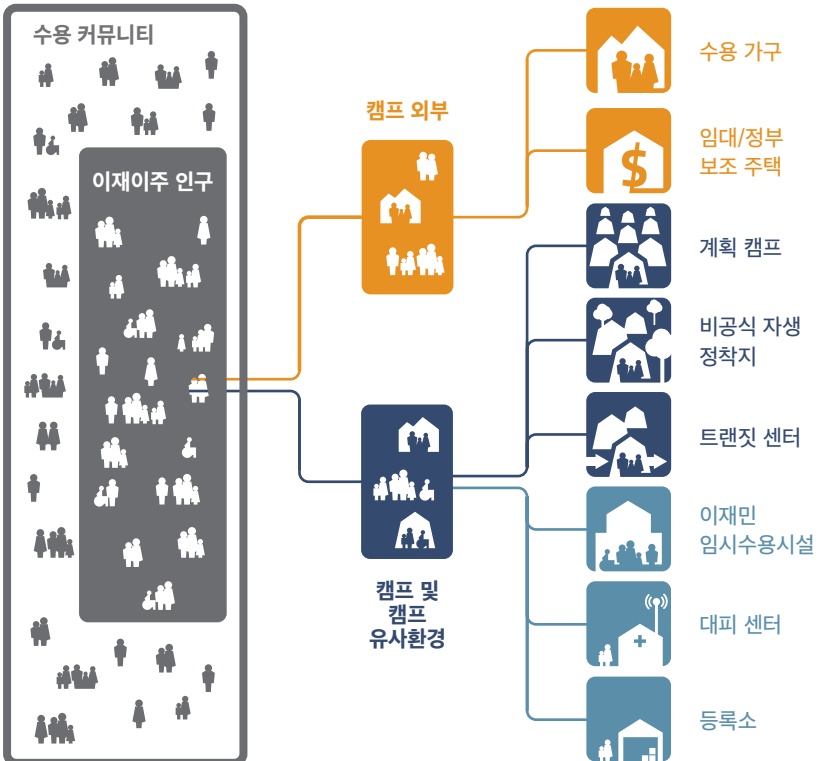
|  |   |
|--|---|
| <p>이재민<br/>임시수용시설</p>                                    | <p>이재민주 인구는 학교, 공장, 막사, 커뮤니티 센터, 시청, 체육관, 호텔, 창고, 폐공장 및 미완공 건물 같은 기존의 공공건물과 커뮤니티 시설에서 숙박할 수도 있다. 이러한 시설은 애초에 숙박시설로 건축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으며, 대체로 도시에서 또는 도시로의 이재이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활용된다. 이재민 임시수용시설은 캠프와 마찬가지로 임시 숙박시설 또는 트랜짓 숙박시설로만 간주된다. 이곳에서 제공되는 인도적 지원은 완전한 지원에서부터 다양한 수준의 자립을 돕는 지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며, 이재민 임시수용시설 관리는 서비스를 조정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p>  |
| <p>등록소 및<br/>트랜짓 센터</p>                                  | <p>등록소 및 트랜짓 센터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시점에 사람들이 적절하고 안전하며 장기적인 거주지로 이송되기 전 임시로 머무는 숙박시설이나 인도적 대응 활동이 끝나는 시점에 귀환을 앞두고 잠시 머무는 대기 장소로서 필요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이들은 보통 중단기로 운영되며 귀환자를 수용하기도 한다. 트랜짓 센터는 보통 해당 인구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보다 많이 수행하며 커뮤니티 참여 활동과 의사결정에 간접적으로만 관여한다.</p>  |
| <p>긴급대피센터<br/>(emergency<br/>evacuation<br/>centres)</p> | <p>긴급대피센터는 사이클론, 화재, 홍수 같은 자연재해처럼 임박한 특정 위험으로부터 대피하는 사람들에게 적절한 임시 쉼터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다. 긴급대피센터로는 흔히 학교, 스포츠 경기장, 종교 시설 또는 민간 건물이 사용된다. 이러한 센터는 재난이 발생하기 이전에 상황과 시간이 가능할 때 미리 계획하여 준비해야 하며, 접근이 가능한 쉼터를 보장하거나 적절한 숙박시설을 마련하기 위해 준비해야 한다. 중앙 당국(central authorities)은 유입 인구 추산치와 하루에 숙박하는 인구수를 고려해 대비해야 한다.</p>   |
| <p>캠프 외부<br/>또는 지역<br/>기반 접근법</p>                        | <p>캠프 외부 또는 지역 기반 접근법('인근 지역(neighbourhood)' 접근법이라고도 불림)은 지정된 지리적 영역에 적용되며 도시, 도시 근교 또는 시골에서 발생한다. 인도적 지원 활동은 환경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기량과 이력을 갖춘 이동식 팀(mobile team)이 제공한다. 이들의 활동은 수용 커뮤니티와 이재이주 커뮤니티를 포함한 모든 커뮤니티에 거주하는 인구에게 현장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센터를 구축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 숙박시설에는 임대 부지 (rented premises)와 자생 정착지(spontaneous settlements)가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접근법은 널리 분산되어 있고 접근이 어려운 이재이주 장소에서 가장 흔하게 활용된다. 또한 변화하는 이재이주 상황에서 활용되기 때문에 적용 주기가 짧으며, 국가 구조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야 한다.</p> |

## 도시 환경

2008년 이래로 전 세계 인구의 50%가 도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도시 인구는 향후 40년간 2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부분의 인구 성장은 특히 남아시아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같은 저개발국가의 도시 및 소도시에 집중될 것이다.

도시의 국내이재이주민(IDP)과 난민은 도시화가 증가하는 글로벌 트렌드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전체 난민의 최소 59%가 현재 도시에서 생활하고 있고 이 수치 또한 증가하고 있다. 이재이주가 도시에서 분산된 형태로 일어나는 현상이 증가하면서 정착 캠프는 예외적인 캠프 유형이 되어가고 있다. 대부분(약 80%)의 IDP는 식별이 가능한 캠프 또는 정착지 외부에 머무는 것을 택하고 있다. 그들은 정부 보조(subsidised) 주택이나 임대(rented) 주택에 사는 현지 가구(local families)에 수용된 상태로 도시, 시골 또는 외딴 환경에 분산되어 거주하거나, 보통 이주민이나 현지의 가난한 사람들과 섞여 도시 환경에 분산되어 거주하거나, 3~5인으로 구성된 소규모의 자생 정착지를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다.

## 정착지 유형



도시 환경은 행정적인 기준이나 정치적 경계, 인구 밀집도와 규모, 경제적 기능, 도시적 특성의 존재 유무와 같은 요소 중 하나 이상을 갖추고 있을 때 형성될 수 있다. 이재이주 인구는 보통 수용 인구가 이미 이용 가능한 서비스, 접근 가능한 위생시설, 적절한 쉼터와 같은 자원을 무리하게 사용하고 있는 도시의 비공식 지역이나 주변부 마을에 정착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상황은 필요에 따른 맞춤형 인도적 지원을 더 어렵게 만들며, 염두에 둔 대상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인도적 대응을 강화하려면 다분야 및 다중 집단 접근법(지역 기반 접근법)을 활용하는 등 현지 당국 및 수용 커뮤니티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

## 인도주의 현장, 인도주의 원칙, 보호 원칙

인도주의 현장, 인도주의 원칙, 보호 원칙은 모두 인도적 지원 활동의 근간을 이루며 모든 위기에 적용된다.

**인도주의 현장**은 보호원칙, 인도적 지원의 핵심기준 그리고 핸드북에 명시된 최소기준에 대한 윤리적, 법적 배경을 제시한다. 인도주의 현장은 한 측면에서는 확립된 법적 권리와 의무에 대한 설명이자, 또 다른 측면에서는 공유된 신념에 대한 설명이다. 법적 권리와 의무 측면에서의 인도주의 현장은 재난 또는 분쟁에 의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복지를 고려한 핵심적인 법원칙을 요약하고 있다. 공유된 신념 측면에서의 인도주의 현장은 여러 관련 활동 주체들의 역할과 책임을 포함하여 재난 혹은 분쟁 대응 원칙에 대한 인도주의 기관 간의 합의를 담고자 한다. 인도주의 현장은 Sphere를 지지하는 인도적 기관들의 서약의 근간인 동시에, 인도적 활동을 수행하는 모든 기관이 동일한 원칙을 채택할 것을 권하는 제안이기도 하다.

현장 관리 책임을 맡은 주체가 국내 혹은 국제 비정부기구든, 국가 당국이든 관계없이, 인류애, 중립성, 공정성 및 운영상의 독립성이라는 **인도주의 원칙**은 비상사태에서 인도적 지원 활동을 수행하는 이해 관계자들의 윤리적 토대가 된다. 네 가지 인도주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 인도주의 원칙   |  |   |   |
|---|--|---|---|
| <p><b>인류애</b></p> <p>어떤 경우에도 인간의 고통을 목격하면 그 고통에 대응해야 한다. 인도적 지원 활동의 목적은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인간에 대한 존중을 보장하는 것이다.</p> | <p><b>중립성</b></p> <p>인도적 지원 활동가는 교전 상황에서 한쪽 편을 들거나 정치적, 인종적, 종교적, 이념적 성격을 띤 논쟁에 관여하지 말아야 한다.</p> | <p><b>공평성</b></p> <p>인도적 지원 활동은 오로지 필요를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가장 시급한 고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국적, 인종, 젠더, 종교적 신념, 계급, 정치적 견해를 근거로 한 차별을 하지 말아야 한다.</p> | <p><b>운영상의 독립성</b></p> <p>인도적 지원 활동은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목적 또는 인도적 지원 활동이 진행되는 지역과 관련해 특정 활동가가 갖고 있을 수도 있는 목적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p> |

모든 인도주의 기관과 마찬가지로, SMA도 인도주의 현장에 제시된 권리를 지지하고 ‘해를 끼치지 않음(Do No Harm)’ 원칙에 바탕을 둔 **보호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기관 간 상임 위원회(Inter-Agency Standing Committee, IASC)가 정의한 보호는 재난이나 무력 분쟁의 영향을 받은 인구의 안전, 존엄, 권리와 관련되어 있다. 보호는 “...관련 법률(예: 국제인권법(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국제인도법(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국제난민법(International Refugee Law))의 형식과 내용에 따라 개인의 권리를 온전히 존중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모든 활동”으로 정의된다. 보호 원칙은 인도적 지원 활동가의 역할이 국가의 역할과 분리되어 있으며, 국가는 영토나 관리 영역에 포함된 사람들의 복지를 보장해야 할 법적 책임을 지닌다고 명시한다.

⊗ 『Sphere 핸드북(The Sphere Handbook)』 2018년도 개정판 33~48쪽(국문 번역본 39~63쪽)의 정의 및 읽기 자료를 참고한다.

현장 관리자는 특히 사람들이 더 큰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나 권리 남용의 위험 등 개입에 따른 일체의 부작용을 막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매일 취함으로써 보호에 기여한다. 그들은 인도적 대응의 전반적인 긍정적 결과와 잠재적인 부정적 결과(⊗ 기준 2 참고)를 판단하기 위해 다양한 현장 거주 집단과 대화를 나누거나, 약탈 행위와 폭력(⊗ 기준 3 참고)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비스와 지원이 제공되는 방식을 조정할 때에 이러한 조치를 취한다. 현장 계획 수립 위원회(site planning committee)의 일부로서 SMA는 현장이 분쟁 지역으로부터 떨어진 장소에 구축 또는 개량될 수 있도록 보장하고(⊗ 기준 4 참고), 필요한 기간 동안 현장에 있는 모든 집단이 인도적 지원과 서비스에 안전하고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기준 5 참고). 유엔난민기구의 『Handbook for the Protection of Internally Displaced Persons (2010)』는 집합 현장의 조정과 관리가 지니는 보호 가치를 이렇게 설명한다. “캠프 관리 및 조정은 보호를 중시하는 관점을 가지고 보호 분야 활동가와의 긴밀한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추진한다면 이재이주 인구가 이용 가능한 인도적 지원 서비스에 정당 하게, 아무런 제지 없이 접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권을 향유하도록 보장할 수 있다.”

⊗ 더 자세한 내용은 유엔난민기구의 『Handbook for the Protection of Internally Displaced Persons (2010)』 버전 6(385쪽)을 참고한다.

## 최후의 수단으로서의 캠프

캠프 또는 모든 임시 집합 현장에서의 거주는 항구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이러한 시설은 언제나 이재이주 상황에 대한 임시적 대응이다. 모든 이재이주가 항구적 해결책을 찾는 것이 이재이주 상황을 종결짓는 핵심이며, 이는 인도적 대응의 시작 단계에서부터 고려해야 한다. 항구적 해결책의 세 가지 유형은 본국 송환(repatriation)과 귀환(return), 현지 통합(local integration), 재정착(resettlement)이다.

| 항구적 해결책    |  |
|------------|--|
| 난민         | 국내이재이주민(IDPs)                                |
| 본국으로의 송환   | 출신지에서의 지속 가능한 재통합 ('귀환'이라고도 함)               |
| 망명국에서의 통합  | IDP가 피난한 지역에서의 지속 가능한 현지 재통합 ('현지 통합'이라고도 함) |
| 제3국에서의 재정착 | 체류국의 다른 지역에서의 지속 가능한 통합 ('정착'이라고도 함)         |

기관 간 상임 위원회(IASC)가 2004년에 발표한 『Guiding Principles on Internal Displacement』는 귀환, 재정착, 통합과 관련된 IDP의 권리를 자세히 설명한다. 난민으로서의 지위는 개인이 세 가지 항구적 해결책 중 한 가지를 통해 다시 국가의 보호를 받는 시민으로 재정립될 때 종결된다. 한편 IDP라는 신분은 국제법에서 특별한 지위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IDP 상태가 종결되는 시점에 관한 법적 합의는 없다. 그러나 개인이 자신의 이재이주 경험과 관련해 더 이상 직접적인 보호와 지원을 필요로 하지 않는 시점이 오면 더는 이재이주민이 아니라고 간주된다.

캠프에서의 거주는 이재이주 상황에 대한 임시 해결책에 불과하기 때문에 SMA는—본질적으로 현장 폐쇄와 연관되어 있는—항구적 해결책을 찾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돕는 데 있어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특정 상황에서는 현장이 폐쇄되었다도 항구적 해결책을 달성하지는 못했을 수 있다. SMA의 역할은 공여 주체와 국가 당국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와 조정을 하고, 적절한 자발적 귀환이나 통합 또는 재정착 과정에 필요한 조건을 지지하며, 현장 거주 인구에게 그들이 가진 권리를 알리는 것이다.

## 최후의 수단 제공 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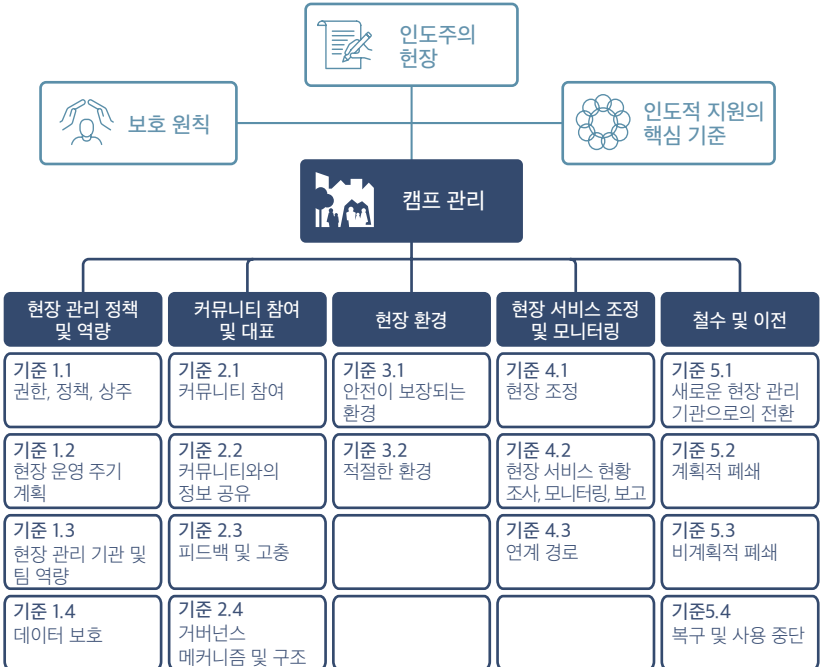
클러스터 접근법이 개시되었고 IDP가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클러스터 주관 기관이 '최후의 수단 제공 기관(Provider of Last Resort, POLR)'이 되어 인도적 대응의 예측 가능성을 보장 할 책임이 있다.

필요할 경우, 그리고 접근성, 안보, 자금의 가용성에 따라, 최후의 수단 제공 기관(POLR) 으로서의 클러스터 주관 기관은 클러스터가 파악한 후 인도주의 조정관이 이끄는 인도적 지원 국가팀(humanitarian country team)의 인도적 대응 계획에 반영된 중대한 공백을 메우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

### 접근성, 안보, 자금의 가용성

클러스터 주관이 공백을 메우거나 POLR에게 요구되는 활동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갖고 있지 못할 경우, 클러스터 주관 기관이 POLR로서의 활동을 이행하리라고 기대할 수는 없지만 클러스터 주관 기관은 인도주의 조정관 및 공여 주체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필요한 자원을 동원해야 한다.

### 캠프 관리를 위한 최소기준







# 현장 관리 정책 및 역량

# 1. 현장 관리 정책 및 역량

현장 관리자는 참여를 증진하고, 피해인구에 대한 책무성을 강화하고, 분야별 인도적 지원 제공자와 정부 사이의 정보 관리에 대한 업데이트를 촉진하며, 이와 동시에 보호 환경을 개선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현장 관리자 및 직원들이 이러한 활동을 수행할 수 있으려면 그들이 소속된 기관이 인도주의 원칙 및 보호 원칙에 바탕을 둔 권한(mandates), 정책, 전략, 활동 계획을 갖고 있어야 한다. 또한 현장 관리자와 직원은 지도감독, 교육(현장(on-the-job)), 교육 및 집중(targeted) 교육 포함, 멘토링(두 명씩 짝을 이루거나 숙련된 직원과 진행), 정기적인 팀 회의, 정기적인 피드백 세션, 주기적인 성과 평가, 서면 보고, 장비 또는 물류 지원을 제공받음으로써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

현장 관리는 인도주의 기관(국내, 국제 또는 자발적 기관)이 수행하거나 지방 또는 중앙 정부 당국이 주관할 수 있다. 자생 정착지가 마련된 상황이나 비상사태 발생 초기에는 커뮤니티가 현장 관리를 주관할 수도 있다. 국가 당국은 안보를 책임지고, 법률과 질서를 유지하며, 캠프 또는 임시 현장(temporary site)이 민간 시설로 유지되도록 보장할 책임이 있다.

현장 관리팀은 현장 인구 및 주변 수용 커뮤니티뿐만 아니라 조정, 정보 관리, 대리 역할 등을 통해 서비스 제공자들에게도 지원을 제공한다. 현장 관리팀의 책임은 앞으로 소개할 각 기준에 명시되어 있지만, 그들의 주요 역할은 책무성을 다하는 데 필요한 진입점(entry point)이 되어 다른 인도주의 기관들이 참여적 접근법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특히 기준 2.1, 기준 2.2, 기준 4.1 참고). 포괄적이고 투명한 파트너십을 맺으면 현장 내부와 외부에서 정당성을 얻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현장은 단기간 운영될 것이라는 생각을 바탕으로 구축되는 경우가 많지만, 그럼에도 항상 장기적인 지원에 대한 필요, 현장 확장, 예상치 못한 만일의 사태를 염두에 두고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수용 커뮤니티의 필요와 역량은 확보한 서비스, 기반 시설, 자산과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평가해야 한다. 학교, 커뮤니티 회관, 도로, 송전 케이블, 급수처와 같은 서비스와 기반 시설은 현지 커뮤니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국가는 영토 내에 있는 사람이라면 이재이주 인구는 수용 커뮤니티 구성원이든 법적 신분과 무관하게 모든 사람을 보호하고 공공질서와 위협으로부터 안보를 지켜낼 책임이 있다. 국가 당국이 위협에 노출되는 상황을 줄이고 이재이주의 일차적 원인이 불려일으킨 모든 파괴적인 영향을 경감해야 한다는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주의 기관은 옹호 활동을 벌여야 한다.

4가지 최소기준에 제시된 핵심 활동과 핵심 지표는 현장 수준뿐만 아니라 인도주의 기관, 조정 플랫폼, 전반적인 인도적 대응에도 적용될 수 있다.

⊗ 『인도적 지원의 핵심 기준(Core Humanitarian Standards, CHS)』 서약 2 참고.

## 기준 1.1: 권한, 정책, 상주

피해인구가 담당 현장 관리 기관을 통해 필요한 기간 동안 동등한 보호와 지원을 받는다.

### 핵심 활동

- 현장 관리 기관(Site Management Agency, SMA)은 전반적인 대응을 전담하는 당국(예: 정부, 클러스터 등)이 지정하며, 이재 이주 인구의 유입으로 인해 특별한 현장 관리 서비스가 필요할 때 현장에서 관리 활동을 수행한다(세부 지침 참고).
- SMA는 인도주의 정책(성적 착취 및 학대의 예방(Preventing Sexual Exploitation and Abuse, PSEA)을 포함)과 전략뿐만 아니라 현장 관리팀이 원칙을 따르는 방식으로 활동하도록 유도하는 리더십과 조직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 SMA는 필수 역량과 충분한 자원을 갖춘 사람들로 구성된 현장 관리팀을 구축한다.
  - 현장 관리팀은 상황에 따라 1개 이상의 물리적 공간을 담당한다.
  - 현장 관리팀은 상주식(stationary) 팀 또는 이동식 팀으로 활동하거나 두 가지 방식이 결합된 팀으로 활동할 수 있다.

### 핵심 지표

- 이재이주 인구 15,000명당 현장 관리팀 1개(세부 지침 참고)
- 전반적인 서비스 수준에 만족하는 현장 인구의 비율(%)
- SMA에 성적 착취 및 학대의 예방(PSEA)을 비롯한 고충을 제기하는 과정을 알고 있는 SMA 직원의 비율(%)

### 세부 지침

1. 현장 관리팀이 특정 장소에 상주할 필요성은 이재이주 인구가 상당히 많고 이재이주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을 때 **제기될** 것이다. 외부 현장 관리팀에 대한 필요성은 현지 당국 또는 인도주의 기관이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할 수 있는 역량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2. 이재이주 인구 15,000명당 현장 관리팀 1개라는 비율은 커뮤니티의 역량, 이재이주 커뮤니티와 수용 커뮤니티의 관계, 서비스 제공 기관의 역량, 특히 대피 센터와 트랜지트 센터 같은 현장의 유형을 고려하여 **맥락화**(contextualization)해야 한다.

3. 도시, 도시 근교, 시골 지역에 흩어져 있는 비공식 현장과 관련하여, SMA는 각 현장의 수, 현장들 사이의 거리, 현장에서 제기되는 필요, 현장에 거주 중인 이재이주민의 수를 바탕으로 현장들 군집시킴으로써 하나의 이동식 팀이 수행해야 하는 인도적 지원을 조사하고 계획할 수 있다. 이동식 현장 관리팀의 현장 방문은 정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특정 지리적 영역에 위치한 인구가 그러한 방문을 예상할 수 있어야 한다. ⊗ 캠프 외부의 현장 관리에 관한 추가 정보는 캠프 조정 및 캠프 관리(CCCM) 클러스터의 2019년 조사 보고서, 『*Management and Coordination of Collective Settings through Mobile / Area Based Approach*』에서 확인할 수 있다.
4. 현장 관리팀은 현장 수준 사무소, 중앙집중식(centralised) 또는 지방(municipal) 사무소, 커뮤니티 자원 센터 등에 근거지를 갖추고 있을 수 있다.
5. 인도주의 원칙(⊗ 도입 참고)을 준수하는 것은 인도적 대응의 기본 토대이며, SMA는 또한 SMA의 활동에 있어서 책무를 다해야 한다. 이는 SMA의 활동이 본질적으로 피해인구 및 커뮤니티의 삶에 영향력과 권력을 행사하기 때문이다.
6. 인도적 대응 초기에는 언론, 공여 주체, 정부로부터의 압력이 압도적이라고 느껴질 수 있다. SMA와 현장 관리팀은 그러한 압력에 못 이겨 지킬 수 없는 약속과 공약을 하게 될 수도 있다. 최소기준은 현장 관리팀이 적절한 우선순위 설정과 인도적 지원 활동의 순서 배치를 통해 그러한 압력을 피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 기준 1.2:

### 현장 운영 주기 계획 수립

적절하고 포괄적인 계획 수립은 현장 구축부터 폐쇄에 이르는 현장 운영 주기를 통틀어 충분한 보호와 지원이 제공되도록 보장한다.

## 핵심 활동

- 현장 관리 활동 계획을 수립한다.
  - 현장의 핵심 구성원들, 그리고 수용 커뮤니티와 현지 당국을 포함한 기타 이해관계자들과 협력 한다.
  - 남성과 여성을 모두 프로젝트 팀에 포함시키고, 커뮤니티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대표자뿐만 아니라 현장 거주 인구 및 수용 커뮤니티에 속한 핵심 정보제공자에도 남성과 여성을 모두 포함 시킨다.
  - 커뮤니티 협의에 참가하는 핵심 이해관계자들을 위해 협의가 적절한 언어와 형식으로 진행 되도록 보장한다.

- 현장 거주 인구의 기술적 필요(technical needs)와 안전을 포함한 재정, 물자, 인적 자원을 고려 한다.
- 취약 인구 및 특정한 필요를 가진 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활동을 조사하고 계획에 포함시킨다.
  - 보호 관련 조사 결과가 현장 관리 활동 계획에 반영되도록 보장한다.
- 요약된 활동 계획을 수용 커뮤니티 및 현지 당국 대표자들과 공유한다.
- 홍수, 화재, 기타 위험 상황 등 현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과 이재이주 인구의 갑작스러운 현장 도착, 계획되지 않은 현장 폐쇄(강제 귀환) 등에 대한 비상 계획(contingency plans)을 수립한다.
  - 최소한 인적 자원, 재정, 장비와 관련된 비상시 필요(contingency needs)를 비상 계획에 포함 시킨다.
  - 계획을 수립할 때 서비스 제공자들이 비상 계획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도록 한다.
  - 취약 인구가 가진 필요를 고려하여 그들이 비상 계획으로 인해 더 많은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보장한다.
- 상황 및 계획 수립 시나리오의 전개에 따라 비상 계획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업데이트한다.
  - 위험을 파악할 수 있도록 조사하고 물리적인 위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현장 내부 및 인근 상황을 모니터링한다.
  - 새로운 서비스 제공자가 비상 계획 및 대피 절차에 통합되도록 보장한다.
  - 비상사태 대응 절차(emergency procedures)를 연습한다.
  - 현장 거주 인구에게 비상 계획 수립과 관련해 수행해야 할 역할을 알린다.
- 수용 커뮤니티 및 현지 당국과의 합의를 통해 토지와 기반 시설을 반환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상세히 정한다.

## 핵심 지표

- 비상 계획을 수립하고 공유하는 데 있어서 커뮤니티 워크숍이 활용된다.
- 현장 관리 활동 계획과 비상 계획이 업데이트된다.

## 세부 지침

1. **현장 관리팀이 수행하는 업무**는 상당한 융통성, 빠른 사고와 우선순위 설정, 혁신, 신중한 계획 수립을 필요로 하며, 업무를 시작하는 첫날부터 끊임없이 변화한다. 핵심 이해관계자들(예: 당국, 수용 커뮤니티 구성원, 서비스 제공자, 비상사태의 영향을 받은 인구 등)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그들과 협의하고, 그들을 참여시키며, 그들에게 보고를 하는 행위에는 효과적인 파트너십 구축을 목표로 협의하는 것과 현장 관리팀의 의도를 투명하게 공유하는 것이 포함될



것이다. 해당 인구의 프로파일을 바탕으로 현장 관리 활동 계획의 이행 상황을 모니터링하려면 명확한 척도를 설정하고 기준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2. 위험 요소와 현장 폐쇄 등을 포함한 민감한 사안에 대해 이재이주 인구나 **협의하기에 적절한 시기**를 고려한다. 가급적 빨리 협의를 진행하는 것을 고려하되, 추가적인 스트레스를 야기해서는 안 된다.
  3. 현장은 단기간 운영될 것이라는 생각을 바탕으로 구축되는 경우가 많지만, 그럼에도 항상 **장기적인 필요, 현장 확장, 예상치 못한 만일의 사태**들을 염두에 두고 현장 운영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수용 커뮤니티의 필요와 역량은 확보한 서비스, 기반 시설, 자산과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평가해야 한다. 학교, 커뮤니티 회관, 도로, 전기 공급 케이블, 급수처와 같은 서비스와 기반 시설은 현지 커뮤니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반대로, 이재민 임시수용시설로 단기간 활용되면서 건물이 손상 되면 현지 커뮤니티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현장 폐쇄 기간에 그러한 자산을 최종적으로 넘겨주는 것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관련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결정하고 합의에 도달해야 한다. 현장 구축/개선과 현장 폐쇄 계획 수립은 처음부터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는다.
- ⊗ 현장 운영 주기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최소기준 3.2 적절한 환경, 4.1 현장 조정, 5.2 계획적 폐쇄도 고려해야 한다.**

⊗ 더 자세한 내용은 『**캠프 관리 툴킷(Camp Management Toolkit)**』 제1장의 **비상 계획 수립**, 제6장의 **환경 계획 수립**, 제12장의 **안전 및 안보**를 참고한다.

## 기준 1.3:

### SMA 및 현장 관리팀 역량

현장 관리팀은 현장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운영상의 역량과 기술적 역량을 갖추고 있다.

#### 핵심 활동

- HR 부서와의 조정을 통해 현장 관리팀 직원의 대표성과 현장 거주 인구의 대표성이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보장한다.
  - 커뮤니티 및 커뮤니티의 필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여성과 남성 직원의 비율을 균형 있게 맞춘다.
  - 종교적 또는 인종적 소수 집단을 비롯해 이재이주 인구의 핵심 소수 집단 출신의 직원이 상주하도록 보장한다.
- 현장 관리팀 직원을 대상으로 CCCM 원칙 및 관행을 교육한다.
- 현장 관리팀 직원을 대상으로 인도주의 원칙과 행동 강령(Code of Conduct)을 지도하고 교육한다.

- 현장 관리팀 직원이 보고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적절한 언어로 기술된 행동 강령에 서명하도록 보장한다.
- 성적 착취 및 학대의 예방(PSEA)을 교육에 포함시킨다
- 현장 관리팀이 상황과 직무에 적절한 장비를 충분히 갖추도록 보장한다.

## 핵심 지표

- 직원의 성비(여성:남성)가 현장 거주 인구의 성비와 비례한다.
- 행동 강령에 서명한 현장 관리팀 직원의 비율(%)
- 각자의 역할과 관련된 적절한 교육을 이수한 현장 관리팀 직원의 비율(%)

## 세부 지침

1. 현장 관리팀의 규모와 구조는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현지 정부와 커뮤니티의 역량, 언어 및 기타 커뮤니케이션 관련 필요, 현장의 성격, 현장 환경의 특징, 서비스 제공 관련 필요와 서비스 제공자의 역량, 안보 상황을 포함한 다양한 요소에 따라 달라진다.
2. 현장 관리팀은 리더십, 보호, 지원, 전문분야, 행정, IT, 분쟁 관리, 정보 관리 또는 커뮤니티 동원 등과 관련된 **기량과 역량을 균형 있게** 갖추고 있어야 한다. 상황에 따라 여성 직원이 과도 대표되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남성 직원이 여성 피해인구와 대화를 나누는 것보다 여성 직원이 남성 피해인구와 대화를 나누는 것이 더 수월하게 진행되기 때문이다.
3. 전담 현장 관리팀은 **처음부터 현장에 상주할** 필요가 있으며, 위기에 영향을 받은 인구를 대표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자원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시간이 지나면 계획된 활동과 현장 상황에 따라 전담 현장 관리팀을 핵심 팀(core team)으로 조정해야 한다.
4. 현장 관리팀은 재정 및 HR 부서 같은 조직 시스템과 리더십뿐만 아니라 **인도주의 정책과 전략**까지 갖춘 기관의 지원을 받아야 하며, 이때 이러한 조직 시스템은 원칙에 기반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복돋는 역할을 해야 한다.
5. 현지 **비정부기구**는 **성공적인** 현장 관리자로 활동할 수 있는 것으로 입증되었다. 국가가 IASC 클러스터 접근법에 따라 활동하는 상황에서, 클러스터 주관 기관은 현장 거주 인구에게 접근하는 것이 허용되고 이러한 접근이 전반적으로 승인된다면 현지 비정부기구가 현장 관리자로 활동하는 것이 하나의 바람직한 선택지라는 사실을 점차 깨달아 가고 있다.
6. 클러스터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SMA는 클러스터 조정관 또는 클러스터 주관 기관에 의해 관리할 **현장을 지정**받을 것이다. 난민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유엔난민기구(UNHCR)가 이러한 현장 지정 과정을 조정할 것이다. 다른 상황에서는 정부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이때 정부는 현지 당국의 역량과 자원을 검증하고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
7. 현장 직원이 CHS와 현장 관리 역할 및 책임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는 클러스터나 각 분야의 주관 기관이 하나의 비정부기구/유엔 기구를 지명하고, 지명받은 비정부기구/유엔

기구가 현장 직원이 『캠프 관리를 위한 최소기준』을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와 같은 지원은 **원격 현장 관리 역량 개발**을 위해서도 활용될 수 있다.

8. 모든 현장 관리 직원을 위한 핵심 **CCCM 교육**에는 최소한 다음과 같은 주제가 포함된다.

- 역할과 책임
- 참여
- 정보 제공 및 경청(책임성)
- 인도주의 원칙 및 보호 원칙
- 조정
- 현장 개선 및 계획 수립
- 현장 폐쇄(Sphere 또는 적절한 현지 건축 법규를 포함한 기술 분야 기준에 따름)

9. 현장 관리팀 직원은 CCCM에 관한 교육을 받는 것을 넘어서서 SMA의 **행동 강령**과 **PSEA**에 관한 교육도 받아야 한다. 거의 대부분의 기관에서 성적 착취 및 학대(Sexual Exploitation and Abuse, SEA)를 보고하는 것은 의무이며, 모두가 지닌 책임성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PSEA는 현지, 국가, 지역, 국제 파트너를 포함한 전체 인도주의 커뮤니티가 공유하고 의무적으로 지켜야 할 책임이다. 성적 착취 및 학대(SEA)에 맞서기 위해 유엔은 예방, 신고, 수사를 위한 조치와 SEA 가해자에 대한 제재 조치를 시행해 왔다. 그러한 조치 중 하나는 국내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었다. 이 네트워크는 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SEA의 예방과 대응을 조정하고 감독하는 주요한 주체로 기능하고 있다. 젠더 평등 교육은 점점 PSEA 교육을 보완하는 교육으로 인정받고 있다.

⊗ 직원에게 요구되는 자격 요건에 관한 추가 정보는 『**캠프 관리 툴킷(Camp Management Toolkit)**』 제2장과 **UNHCR/IOM이 2011년에 발표한 『Collective Centre Guidelines』**를 참고한다. 직원 채용, 교육, 지도감독 체크리스트는 『**캠프 관리 툴킷**』 제2장을 참고한다.

⊗ 이용 가능한 교육 자료에 관한 추가 정보는 글로벌 **CCCM 클러스터 학습 사이트**(<https://www.cccmllearning.org/login/index.php>)에서 확인할 수 있다.

## PSEA 자료

⊗ 직원에 의한 SEA 금지 관련 내용은 『**캠프 관리 툴킷**』 제2장을 참고한다.

⊗ IASC PSEA 6가지 핵심 원칙을 참고한다.

⊗ IASC 및 글로벌 보호 클러스터가 2015년에 발표한 『젠더기반폭력에 대한 개입을 인도주의 활동에 통합하기 위한 지침: 위험 감소, 회복력 증진 및 복구 지원(Guidelines for Integrating Gender-Based Violence Interventions in Humanitarian Action: Reducing Risk, Promoting Resilience and Aiding Recovery)』을 참고한다.

⊗ 『2018년 유엔 사무총장 보고서: 분쟁 관련 성폭력(2018 Report of the UN Secretary-General: Conflict-Related Sexual Violence)』을 참고한다.

⊗ 이해를 돕기 위해 100개 이상의 언어로 설명한 IASC의 6가지 핵심 원칙은 ‘Translators Without Borders’ (<http://www.translatorswithoutborders.org/psea-translated>)를 참고한다.

## 기준 1.4: 현장 거주 인구 데이터베이스 및 데이터 보호

현장 거주 인구로부터 수집한 모든 개인 정보를 적절히 수집하고 저장하며 활용한다.

### 핵심 활동

- 현장 거주 인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유지관리한다.
- 적용 가능한 데이터 보호 정책을 인식하고 이해하여 SMA가 수집한 데이터에 적용한다.
  - 안전하고 잠금장치가 갖춰진 공간, 전자기기를 이용한 백업, 비밀번호 설정, 민감한 데이터에 대한 접근 제한 등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절차가 마련되도록 보장한다. 기밀문서는 확실하게 구별해야 한다.
  - 필요할 경우, 익명성을 보호하기 위해 개인 정보는 삭제하거나 암호화해야 한다.
  - 대피 또는 철수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정보를 보호 또는 파기하기 위한 명확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 모든 현장 담당 기관과의 조정을 통해 동의의 의미를 정의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등 현장 수준에서 합의한 데이터 공유 및 보호 프로토콜을 개발하고 서로 다음 사항에 대해 합의한다.
  - 저장 시스템에 수집 및 저장될 데이터의 종류, 데이터를 수집 및 저장하는 주체, 데이터 수집 및 저장 방법
  - 데이터를 통해 얻은 정보나 보고서를 배포함으로써 현장 거주 인구가 마주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법
  - 접근 제한 상태를 유지해야 할 정보의 종류
- 모든 조사원에게 합의된 공유 및 보호 규칙을 교육하기 위해 이해관계 기관들과 조정한다.
- 데이터의 활용 및 공유 방법을 모니터링하고 감독한다.

### 핵심 지표

- 현장에서 활동하는 모든 이해관계자를 위한 구체적인 동의 및 기밀유지 프로토콜이 합의에 따라 마련되어 있다.
- 현장에서 활동하는 모든 이해관계자를 위한 정보 공유 관행이 합의에 따라 확립되어 있다.

## 세부 지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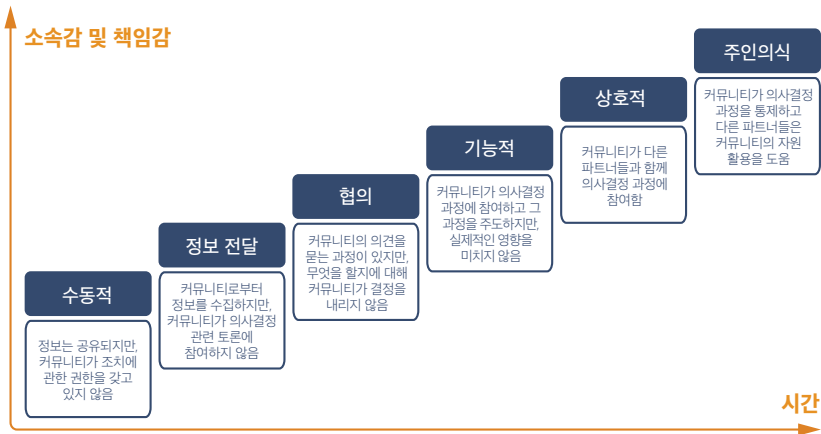
1. 인도주의 활동에 보다 발전된 형태의 데이터 과학을 적용하는 것에 관한 인도주의 기관 및 정부의 증대된 관심과 요구는 CCCM 분야에 새로운 기술 또는 데이터 보존 방법을 도입할 때 부딪히는 어려움을 SMA와 현장 관리팀이 더 잘 이해해야 할 필요성을 부각한다.
  2. 생체 인식이나 여타 시스템이 활용될 경우, 현장 거주 인구는 자신의 생체 정보가 어떤 목적으로 활용될지, 그러한 정보가 누구와 공유될지, 정보가 얼마나 오래 보관될지, 생체 인식 정보를 대체할 방법이 존재하는지를 이해해야 한다.
  3. 현장 관리팀은 인도적 대응을 통해 보호와 지원을 제공해야 할 대상을 더 잘 특정할 수 있도록 개인에 관한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그러나 무책임한 정보 처리는 사람들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심각한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현장 거주 인구의 이익을 위해 정보를 수집하고 공유하는 것과 정보의 오용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는 것 사이에서 올바른 균형을 찾으려면 다음과 같은 원칙을 따라야 한다.
    - 수집해야 할 데이터를 결정할 때 해당 정보가 필요한 이유를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 보호 목적에 부합하고 정보 제공자나 타인에게 해를 입히지 않는 정보만 수집해야 한다.
    - 특히 민감할 수 있는 데이터를 파악함으로써 정보 수집과 공유가 보호 조치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도록 보장한다.
    - 보호 관련 우려 사항을 민감하게 고려하는 방식으로 데이터를 수집함으로써 누군가의 안전과 프라이버시를 위험에 빠뜨리지 않도록 한다.
    - 정보가 공유되는 방식에 대해 모든 인도주의 이해관계자들과 합의하고, 해당 정보가 공유되어야 하는 이유를 명확히 한다. 합의한 보호 관련 목적에 부합하는 정보만 공유해야 한다.
    - 개인 정보는 당사자로부터 고지에 입각한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공유한다. 이 사실을 데이터 수집 시 당사자에게 설명한다.
    - 위험 분석을 실시한다. 각 정보의 유형에 따라 위험의 수준이 다를 것이며, 현장 관리팀은 다른 운영 기관들과 협력하여 위험의 수준을 판단하고 그에 따라 정보 관리 시스템을 설계해야 한다.
- ⊗ 『Sphere 핸드북(The Sphere Handbook)』의 ‘웹터 및 정착지’장도 참고한다.
- ⊗ 『캠프 관리 툴킷(Camp Management Toolkit)』 제5장의 정보 관리 체크리스트뿐만 아니라 데이터 보호 및 정보 관리에 관한 추가 정보도 참고한다. 『캠프 관리 툴킷』 제2장의 정보 관리 체크리스트도 참고한다.
- ⊗ 국제적십자위원회(ICRC)가 2020년에 발표한 『Handbook on Data Protection in Humanitarian Standards』도 참고한다.

# 커뮤니티 참여 및 대표

## 2. 커뮤니티 참여 및 대표

모든 인구 집단이 의사결정과 현장 거버넌스 구조에 의미 있는 참여를 하도록 보장하는 것은 올바른 현장 관리의 핵심적인 부분이다. 참여는 인도적 위기가 발생한 기간 동안 모든 유형의 임시 정착지에서 이재이주 인구의 기본적인 권리와 건강, 심리·사회적 웰빙, 안전을 지키는 데 있어서 핵심적이다. 또한 참여는 이재이주 커뮤니티 내 모든 집단이 가진 서로 다른 요구와 역량 및 기대가 대변되고 다루어짐으로써 피해인구에 대한 인도적 대응과 책무성이 향상되도록 하는 주요 단계이다. 현장이 제 역할을 잘하는지의 여부는 현장 인구가 적극적으로 의미 있는 참여를 하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한 참여를 뒷받침하려면 커뮤니티 대표들이 대응적인(responsive) 리더가 되도록 복돋는 교육과 코칭 그리고 독려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 참여의 단계



출처: 『캠프 관리 툴킷(Camp Management Toolkit)』

참여는 장기적인 과정이며 현지 상황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필요로 한다. 참여의 목적은 단순히 이재이주 커뮤니티 내 다양한 집단이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현장 거주민들이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참여하고 그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보통 긴급한 비상사태(rapid-onset emergency) 발생 초기 단계에서는 현장 관리팀과 현장 인구가 의미 있는 참여에 우선순위를 둘 시간이나 여력이 없을 수 있다. 그러므로 이를 염두에 두고 정보 전달 방법, 협의 과정, 피드백 메커니즘, 현장 거버넌스 구조를 비상사태 발생 초기에 구축해야 한다.

참여를 가로막는 장벽은 상황 및 현장에 있는 각 집단의 특성에 따라 다르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 할 것이다. 그러한 장벽은 사회적인 장벽일 수도 있고 물리적 환경과 관련되어 있을 수 있다.

기존의 규정이나 정책 가운데 특정 인구 집단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장벽이 존재할 수도 있다.

현장에서의 의사소통 활동은 의미 있는 커뮤니티 참여와 이해관계자의 책무성을 증진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이다. 대부분의 의사결정 과정에서는 현장에서의 삶에 관한 현장 거주민의 생각을 고려하고 포함시켜야 한다. 현장 관리자의 역할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 쌍방향의 정보 흐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구축하는 것이다. 현장에서 매일 발생하는 어려움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투명한 대화를 나누어야 커뮤니티 참여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현장 거주 인구와의 직접적인 소통뿐만 아니라 문자 메시지와 웹사이트 같은 수단도 현장 전체에서 대화를 증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점점 더 흔하게 활용되고 있다.

⊗ 『인도적 지원의 핵심 기준(CHS)』 서약 3, 4, 5, 8 참고.

## 기준 2.1: 커뮤니티 참여

커뮤니티 인구가 현장 관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 의미 있는 참여를 할 수 있다.

### 핵심 활동

- 현장 관리의 일환으로 효과적인 참여를 구축함에 있어서 충분한 시간과 자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편성한다.
- 현장 거주 인구가 프로젝트 주기의 각 단계(현황 조사, 계획 수립, 이행, 모니터링, 평가 등)에 참여하고 관여하는 것에 대해 다른 이해관계자들과 합의한다.
- 캠프 직원들이 참여 방법론을 활용하도록 교육과 지원을 제공한다.
- 인도적 지원 서비스 제공자들이 참여적 접근법과 방법론을 활용하도록 독려한다.
- 잠재적인 참여 및 권력 남용을 모니터링하고 관리한다.
- 필요에 대한 모니터링에 대응하기 위하여 현장 관리 프로그램 설계를 조정한다.

### 핵심 지표

- 현장 관련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에 있어서 현재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에 만족하는 현장 거주 인구의 비율(%)
- 자신의 견해가 의사결정 과정에서 고려된다고 생각하는 여성 위원회 구성원의 비율(%)
- 커뮤니티 대표자들이 참석하는 기관 간 조정 회의(inter-agency coordination meetings)의 비율(%)



## 세부 지침

1. 흔히들 의사결정 과정에서 **여성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메커니즘이 필요하다고 가정한다. 이러한 별도의 메커니즘은 제한적인 문화 환경에서 여성을 참여시킬 때 유용할 수도 있고, 여성들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안들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프라이버시와 공간을 보장받으려면 별도의 집단이 필요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별도의 집단이 존재한다고 할지라도 이는 전반적인 현장 거버넌스 구조에서 여성의 참여를 강화하는 것과 연계되어야 한다. 일반적인 위원회에서 여성의 참여를 증진하는 것도 남성이 현장 의사결정에서 유일한 혹은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필요하다.
  2. 의사결정에 대한 참여는 공식적일 수도 비공식적일 수도 있으며, 이때 서비스 제공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다. 다양한 참여적 접근법과 전략을 활용하는 것이 유용할 수도 있지만 서로 다른 조직 정책, 내부 경험, 인력 구축을 통한 간접적 지원 또는 자금 제공을 통한 직접적 지원 등을 복합적으로 활용할 경우 현장 거주 인구에게 혼란을 야기하고 긴장을 조성할 수도 있다. 현장 관리 기관(Site Management Agency, SMA)은 **활용되는 참여적 접근법의 투명성**을 현장 인구와 함께 **증진**하고 모범 사례와 교훈을 공유하는 모임을 조직할 수 있도록 모든 적절한 이해관계자와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 SMA는 다양한 대응 단계에서 직접적인 커뮤니티 참여와 선출된 대표들을 통한 간접적인 참여 사이에서 올바른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3. **참가자들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 너무 제한적이거나 너무 폭넓은 선택을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간주될 수 있다.** 사전에 논의 또는 의사결정 관련 주제들을 공고하면 참가자들은 어떻게, 어디서, 언제 참여하고 싶은지를 어느 정도 선택할 수 있다.
  4. SMA는 이재이주가 수용커뮤니티에 미치는 영향과 자원에 대한 수용 커뮤니티의 접근성 등 **수용 커뮤니티**를 고려함으로써 긴장이 조성되는 상황을 막고, 수용 커뮤니티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그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합해야 한다.
  5. **캠프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커뮤니티 구조가 전통적인 계획 캠프와 비공식 현장에서 거의 동일한 방식으로 우선순위를 파악하고 집단적 문제를 해결하는 형태를 갖게 된다. 이러한 두 가지 캠프 조정 및 캠프 관리(CCCM) 접근법에 존재하는 서로 상반되는 참여적 기법은 누구의 참여를 독려하고 싶은지와 더 관련되어 있을 것이다. 캠프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참여가 독려되는 대상은 주로 비정부기구이며, 지역 기반 CCCM 프로그램에서는 현지 정부나 당국 그리고 서비스 제공자를 포함한 보다 광범위한 대상의 참여를 복돋고자 한다.
  6. SMA는 **특정한 필요를 가진 인구**에 장기적인 감각적, 신체적, 정신적, 지적 또는 기타 손상을 가진 사람들이 포함되며, 이러한 어려움이 다양한 장벽들과 상호작용하여 그들이 인도적 지원 프로그램이나 서비스 또는 보호에 참여하거나 이러한 요소에 접근하지 못하게 방해한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한다. 인도적 지원 활동가는 특정한 필요를 가진 사람들이 맞닥뜨리는 다양한 형태의 차별뿐만 아니라 인도적 대응에 기여할 수 있는 그들의 역량도 이해하고자 해야 한다.
- ⊗ 『**캠프 관리 툴킷(Camp Management Toolkit)**』 제3장에서 **커뮤니티 참여 체크리스트**뿐만 아니라 **참여의 방법 및 참여를 가로막는 도전과제들에 관한 추가 내용**을 참고한다. 또한 『**캠프 관리 툴킷**』 제2장의 **거버넌스 구축 및 커뮤니티 참여 메커니즘 체크리스트**도 참고한다.

- ⊗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추가 내용은 <https://www.un.org/development/desa/disabilities/%20convention-on-the-rights-of-persons-with-disabilities.html>에서 참고한다.
- ⊗ 여성의 참여에 관한 추가 내용은 노르웨이 난민 위원회(NRC)의 『캠프 관리 접근법을 통한 이재이주 여성과 여아의 참여 및 보호 개선』을 참고한다.
- ⊗ 전통적인 캠프 및 캠프 외부 접근법과 관련하여 캠프 위원회의 참여를 구축하기 위한 코칭 기법 활용법은 <https://www.youtube.com/watch?v=cExBGw9g3aM> 에서 확인할 수 있다.
- ⊗ 캠프가 아닌 환경에 관한 추가 내용은 글로벌 CCCM 클러스터의 '2019 관리'에서 참고한다.

## 기준 2.2: 커뮤니티와의 정보 공유

이재이주 커뮤니티, 수용 커뮤니티, 모든 기타 이해관계자들과의 정기적인 의사소통이 적절하고 적합하게 이루어진다.

### 핵심 활동

- 관련 이해관계자들을 위해 적절한 언어와 형식의 정보 배포 메커니즘을 구축한다.
  - 초기 및 지속적인 현황 조사에 의사소통 시 선호되는 언어와 형식 및 채널에 관한 질문이 포함 되도록 한다.
- 합의하에 표준화된 핵심 메시지나 자주 묻는 질문(Frequently Asked Questions, FAQ)을 생성하고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해 모든 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 질병이 발생할 경우, 각국 내 보건부를 포함한 보건의료 분야 활동가들로부터 커뮤니티 메시지 전달에 관한 종합적인 지침을 얻는다.
- 정보 공유를 위한 최소기준 또는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모든 서비스 제공자에게 그러한 기준을 활용할 것을 권한다.
- 기관의 역할과 권한, 서비스 관련 세부 사항, 연락처 정보를 비롯해 제공되는 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현장 거주 인구에게 정기적으로 배포한다.
  - 식량 배급량에 변화가 생기는 등 서비스가 변경될 경우 그러한 정보가 반드시 업데이트되도록 한다.
- 현장 거주 인구가 메시지와 정보를 확실히 수신하고 이해했는지를 추적 관찰한다.

## 핵심 지표

- 서비스 제공자(기관 또는 직원)의 이름을 말할 수 있는 현장 거주 인구의 비율(%)
- 최근에 접한 핵심 메시지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현장 거주 인구의 비율(%)
- 핵심 메시지를 공유하기 위해 적절한 정보 공유 방법이 활용된다.

## 세부 지침

1. 캠프가 존재하는 환경 및 캠프가 존재하지 않는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핵심 활동들은 이재이주 커뮤니티와 수용 커뮤니티를 위해 **현장 수준의 정보 캠페인**을 구축하고 공유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캠프 외부 환경이 지닌 가장 큰 차이점은 캠프에서와는 다른 유형의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모든 유형의 캠프 외부 환경에서는 사람들이 서로 흩어져 있고 고립되어 있기 때문에 계획 캠프 밖으로 정보를 퍼뜨리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정보 공유를 위한 기존 메커니즘을 활용하는 동시에 해당 지역 인구가 지닌 다양하고 광범위한 필요를 고려해야 한다. 캠프 환경에는 유사한 취약성을 갖는 상대적으로 동질적인 인구 집단이 거주할 가능성이 높다.
2. **트랜짓 센터와 대피 현장**에서는 현장 거주 인구와의 정보 공유를 위해 표적집단(focus groups)을 활용할 수 있다.
3. 현장 거주 인구는 **다양한 수준의 문해력**(예: 아동과 성인의 문해력 차이)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두 개 이상의 언어가 사용될 수도 있다. 현장 거주 인구는 다양한 정보원(information sources)에 의존할 가능성이 있다. 가령 청년이 의존하는 정보원과 노인이 의존하는 정보원은 상당히 다른 경우가 많다. 일부 인구(예: 감각적 또는 인지적 손상을 지닌 사람 등)는 특정 유형의 정보와 형식에 접근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 정보 배포에 관한 추가 내용을 확인하고 『**캠프 관리 툴킷(Camp Management Toolkit)**』에 실린 **정보 배포 체크리스트**를 참고 한다.

⊗ 더 자세한 내용은 『**인도적 지원의 핵심 기준(CHS)**』 서약 4의 **정보 공유에 관한 내용**을 참고한다.

### 기준 2.3:

### 피드백 및 고충

이재이주 인구나 수용 인구를 포함한 현장 거주 인구가 서비스 제공자에게 피드백과 고충을 전달할 수 있는 안전하고 반응적인 메커니즘에 접근할 수 있다.

## 핵심 활동

- 현장을 구축할 때, 현장 거주 인구 및 서비스 제공자와 함께 인도적 대응 메커니즘과 더불어 조화로운 피드백 및 고충처리 메커니즘을 마련한다.
  - 필요할 경우 서비스 제공자들이 가진 서로 다른 메커니즘을 조정 또는 통합한다.
  - 구두, 서면, 전자, 종이, 의견 상자, 안내 데스크, 핫라인 등 다양한 형태의 피드백 및 고충 접수 방법을 활용한다.
  - 메커니즘을 활용할 때 기밀이 유지될 수 있도록 보장한다.
  - 메커니즘에 상호 합의된 현실적인 대응 기간이 포함되도록 보장한다.
  - 피드백 및 고충 추적 시스템을 구축한다.
  - 모든 사람이 장애 여부와 무관하게 정보에 접근하고 의견을 표현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 서비스 수준의 변경 등 필요할 경우 표준 운영 절차(Standard Operating Procedures, SOP)를 업데이트한다.
- 피드백 및 고충처리 메커니즘에 관한 정보가 적절한 언어 및 형식으로 제공되어 다양한 수준의 문해력 및 기술 활용 능력이 고려되고 특정한 필요를 가진 인구도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 직원들을 대상으로 기밀유지에 관한 교육을 제공한다.
  - 서비스 제공자와 협력하여 현장에서 활동하는 모든 직원이 공통의 이해를 갖도록 보장한다.
- 피드백과 고충에 대응하고, 피드백과 고충을 추적 및 기록한다.
- 성적 착취 및 학대의 예방(PSEA) 보고 채널과 추적 메커니즘이 갖춰지도록 보장한다.
  - 이재이주 인구 및 수용 인구를 포함한 현장 거주 인구를 대상으로 PSEA 및 사건 보고 방법에 관한 인식을 제고한다.
- 피드백 및 고충처리 메커니즘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모니터링한다. 필요할 경우, 현장 거주 인구가 개별 기관의 메커니즘으로부터 제대로 된 응답을 받고 있는지 여부를 서비스 제공자를 통해 직접 확인한다.

## 핵심 지표

- 피드백 및 고충처리 메커니즘과 메커니즘에 접근하는 방법을 인지하고 있는 현장 거주 인구의 비율(%)
- 합의한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고, 문제가 처리되어 결과가 당사자에게 전달된 고충 또는 피드백의 비율(%)
- 현장 거버넌스 구조에 속한 집단 중에서 행동강령에 관한 교육을 받은 집단의 비율(%)

## 세부 지침

1. 캠프 환경에서 받는 피드백은 부정적인 상황과 연관된 경우가 많다. 지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고충을 제기할 권리를** 갖고 있으며, 모든 고충을 해결할 수는 없더라도 **각 고충에 대한 대응은 필요하다.** 이재이주 커뮤니티에서 사용하는 언어는 해당 인구가 선호하는 언어여야 한다. 고충처리 절차를 위한 표준 운영 절차(SOP)를 구축하고 이와 관련해 직원 및 커뮤니티 지도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제공해야 하며, 이 SOP에는 접근성, 효과성, 기밀유지와 관련된 요소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수용 커뮤니티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포함한 이재이주 커뮤니티의 **모든 구성원이** 가진 견해와 필요가 다양한 형태의 피드백 및 고충처리 메커니즘을 통해 전달된다.
  3. 피드백을 위해 활용되는 **의사소통 도구**의 예시로는 고충처리 위원회, 건의함, 시청자가 전화로 참여하는 라디오 방송, SMA 또는 인도주의 커뮤니티에 전송되는 편지, 핫라인, SMS 문자 전송 등이 있다. 또한 SMA 직원이 작성한 표준화된 모니터링 양식을 지침하여 합리적인 시간에 찾아가는 가정방문도 포함된다.
  4. **익명성과 기밀유지**를 보장하는 절차를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성적 착취 및 학대(SEA)와 인권 침해 등 민감한 사안의 추적 관찰 및 연계 절차는 가능하다면 보호 전담 담당자(focal point)의 역할을 하는 하나의 기관이나 해당 분야의 기관이 책임져야 한다.
  5. 활용되는 **접근법**은 구체적인 상황을 반영해야 한다. 접근법은 피드백이 처리되는 방식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보통 비공식 메커니즘과 공식 메커니즘을 혼합하는 방식이 활용된다. 이상적인 관점에서는 당사자들이 흔히 활용하고 선호하며 이해하는 의사소통 방법을 활용해 피드백 및 고충처리 메커니즘을 설계해야 한다. 적절한 피드백 및 고충처리 메커니즘을 마련할 때에는 현장 거주 인구의 문해율, 취약 집단을 포함한 모두가 메커니즘에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는지 여부, 의사소통 지원과 관련된 기밀유지 및 절차를 진행하는 데 필요한 가용 자원 등 모든 것을 고려해야 한다.
  6. SMA는 가능한 한 다양한 공식 및 비공식 피드백 메커니즘을 **조정하고 그러한 메커니즘이 조화를 이루게 해야 한다.** 또한 이때 동일한 메커니즘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메커니즘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면 새로운 메커니즘 구축을 촉진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SMA는 모든 기관의 참여를 독려해야 한다.
  7. 보호 관련 데이터 수집은 대응 역량이 갖춰져 있고 이러한 정보가 어떻게 활용될 것인지를 현장 거주 인구에게 설명할 수 있는 경우에만 진행해야 한다. 보호 주관 기관은 기밀유지를 보장하는 데 있어서 더 많은 지원을 필요로 하는 기관을 위해 역량을 개발하고, 보호 전담 기관 및 적절한 사례 관리 시스템과의 사례 연계 경로를 구축해야 한다.
- ⊙ **피드백 및 고충처리 메커니즘에 관한 추가 내용은 『캠프 관리 툴킷(Camp Management Toolkit) 제3장에서 참고한다.**
- ⊙ **피드백 및 고충처리 메커니즘에 관한 추가 내용은 『인도적 지원의 핵심 기준(CHS)』 서약 4, 5 를 참고한다.**

## 기준 2.4: 거버넌스 구조

포괄적이고 대표적인 거버넌스 구조가 책무성 및 현장 거주 인구의 필요를 충족할 역량을 갖추고 있다.

### 핵심 활동

- 기존의 참여 구조 및 힘의 역학 관계를 조사하고 이해한다.
- 현장 거버넌스 집단 또는 위원회의 구조 및 선발에 대해 커뮤니티 내 핵심 정보제공자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과 협의한다.
- 기존의 거버넌스 구조 또는 커뮤니티 리더십을 통합하거나, 조정하거나, 지원한다.
- 수용 커뮤니티의 역할을 조사하고, 수용 커뮤니티가 특히 분쟁 해결과 관련해 거버넌스 구조 내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보장한다.
- 다양한 현장 관리 집단 또는 위원회를 위해 행동 강령을 포함한 과업지시서(Terms of Reference, ToR)를 마련한다.
- 집단 또는 위원회를 위해 상호 합의된 참여적 선발 과정을 활용한다.
- 이러한 참여적 구조가 현장에서의 인도적 지원 및 보호 제공과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옹호 활동을 벌인다.
- 수용 커뮤니티를 비롯한 모든 현장 인구에게 집단 또는 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을 알린다.
- 여성과 청년을 비롯해 종종 다른 인구보다 덜 대표되는 사람들과 윤리적인 방식으로 관계 맺는 방식을 체계적으로 조사함으로써 그들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낙인이 강화되지 않도록 한다. 이러한 인구 및 집단이 의사결정 과정에 포함되고 의미 있는 역할을 맡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 모든 외부 이해관계자(예: 서비스 제공자, 현지 정부, 수용 커뮤니티 등)와 의사소통함으로써 그들이 상호 합의된 거버넌스 구조, 집단 또는 위원회의 역할과 책임, 그러한 집단 또는 위원회와 협력하는 방법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 현장 거버넌스 위원회 또는 집단의 역량을 개발한다.
- 현장 거버넌스 위원회와 집단의 성과를 과업지시서(ToR)를 기준으로 모니터링하고, 해당 위원회 및 집단과 협력하여 그들이 현장 인구에 대한 책무를 다하도록 보장한다.

## 핵심 지표

- 자신이 현장 거버넌스 구조에 의해 혹은 현장 거버넌스 구조를 통해 대표된다고 생각하는 현장 거주 인구의 비율(%)
- 현장 거버넌스 구조가 포괄적이고 효과적이며 모든 이재이주 인구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현장 거주 인구의 비율(%)
- 거버넌스 구조가 현장 거주 인구의 구성을 반영한다.

## 세부 지침

1. 여성, 아동, 소수집단을 포함하여 **대표될 수 있는(representative) 현장 거버넌스** 구조를 형성하는 것은 각각의 운영 상황에 따라 다를 것이다. **커뮤니티 매핑 연습(community mapping exercises)**은 SMA에 유용한 도구일 수 있다. 이 도구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리고 (장기화된 상황뿐만 아니라) 모든 상황에서 현장 거주 인구의 필요 및 그들이 선호하는 의사 소통 방식과 중요한 사안에 대한 핵심 이해관계자들의 견해를 더욱 명료하게 할 수 있다.
2. 특정 집단이 거버넌스 구조에 의미 있는 참여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할 수 있는 **문화적, 물리적 또는 사회경제적 장벽**을 인식하고 이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재이주 커뮤니티와 수용 커뮤니티에서 기존에 작용하고 있는 힘의 역학 관계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집단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고자 할 때 맞닥뜨리는 장벽을 이해하는 것은 모든 집단의 참여를 증대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을 규정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단계이다.
3. 일부 상황—특히 캠프 외부 상황—에서는 커뮤니티 대표단이나 거버넌스 구조 또는 리더십이 **이미 존재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이러한 집단의 활동 방식, 역할, 그리고 전체 커뮤니티를 어느 정도까지 적절히 대표할 수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철저한 분석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분석의 결과에 따라 새로운 구조를 구축해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도 기존 구조를 확대하거나, 단순히 지원과 역량을 강화해 기존 구조가 인도적 지원 및 보호를 조정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적절할 수도 있다.
4. **단기 이재민 집단수용시설**(트랜짓 센터와 대피 센터 포함)을 위한 참여적 모델은 일반적으로 데이터 수집 또는 배포를 강화하고, 적절한 인도적 서비스를 설계하며, 정보 보급 및 분쟁 해결을 위한 모임을 제공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 이러한 시설을 위한 모델은 흔히 운영 위원회(steering committees), 커뮤니티 게시판, 하위 분야 전문 그룹의 형태를 취한다. 장기 이재민 집단수용시설도 유사한 목적을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이와 다른 형태(예: 국가 협회 등)를 취하며, 시민사회와 협력하거나 옹호 활동을 목표로 삼는다.
5. 위험 상황이 발생한 직후에 커뮤니티 구성원들의 특정한 **문화적 관행과 전통**에 우선순위를 두기 위한 협력이 진행되도록 하는 것은 사회적 결속력을 견고히 하는 데 있어서 매우 가치 있는 조치가 될 수 있다. 이와 동시에 일부 문화적 관행은 커뮤니티 구성원들에게 해를 입힐

수도 있으며, 현장 관리자들은 인권에 대한 존중과 전통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한다. 그러므로 거버넌스 구조에는 남성, 여성, 아동, 취약 집단뿐만 아니라 문화적 지도자와 대표자들의 존재도 반영되어야 한다.

6. 현장이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하나의 이해관계자 집단으로서의 **현지 시장 활동가**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들과 협의하여 생계와 조기 회복이 연결될 수 있도록 한다.

⊗ 대표자 구성 및 거버넌스 구조 확립에 관한 추가 정보는 『**캠프 관리 툴킷(Camp Management Toolkit)**』 제2장 및 제3장과 CCCM 클러스터 『**Collective Centre Guidelines**』 제4장을 참고한다. 또한 『**캠프 관리 툴킷**』 제2장의 거버넌스 및 커뮤니티 참여 메커니즘 구축 체크리스트도 참고한다.

⊗ 커뮤니티 참여에 관한 추가 정보는 『**인도적 지원의 핵심 기준(CHS)**』를 참고한다.

⊗ 아동의 참여를 지원하는 방법에 관한 추가 정보는 『**인도적 활동 시 아동보호를 위한 최소기준 (Minimum Standards for Child Protection in Humanitarian Action)**』의 기준 23: 캠프 관리 및 아동 보호를 참고한다.





# 현장 환경

## 3. 현장 환경

현장 위치 및 현장 계획 수립은 현장 관리 기관(Site Management Agency, SMA)이 일상 활동을 관리하고, 이재이주 인구의 참여를 보장하며, 수용 커뮤니티와의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능력뿐만 아니라 이재이주 인구의 건강과 웰빙 및 보호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현장의 물리적 위치와 배치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현장이 구축되고, 성장하고, 변화하고, 개선되고, 궁극적으로는 폐쇄되는 과정이다.

현장은 단기간 운영될 것이라는 생각을 바탕으로 구축되는 경우가 많지만, 그럼에도 항상 장기적인 필요, 현장 확장, 예상치 못한 만일의 사태들을 염두에 두고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수용 커뮤니티의 필요와 역량은 확보한 서비스, 기반 시설, 자산과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평가해야 한다. 학교, 커뮤니티 회관, 도로, 송전 케이블, 급수처와 같은 서비스와 기반 시설은 현지 커뮤니티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토지 할당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은 국가 당국에 있다. 클러스터/분야 주관 기관이 존재할 경우, SMA는 그들의 지원을 받아 현장 운영 주기 동안 취해지는 모든 조치가 종합적이고, 포괄적이며, 잘 조정되어 이재이주 인구의 권리를 지지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상황에 따라, 특히 자연재해로 인한 이재이주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현장 관리 및 조정역할을 국가 당국이 수행하는 경우가 점점 더 많아진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현지 당국은 위기 발생 시 최초의 대응자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상황에 따라 현장을 직접 관리하는 역할을 맡기도 한다. 또한 일부 상황에서는 해당 국가의 정부가 외부 기관 또는 캠프 조정 및 캠프 관리(CCCM) 클러스터에 비상사태 대응을 공동 주관할 것을 요청할 수도 있다.

⊗ 『인도적 지원의 핵심 기준(CHS)』 서약 1 참고.

### 기준 3.1:

#### 안전이 보장되는 환경

모든 현장 거주민과 서비스 제공자가 위해 또는 폭력으로부터 안전하며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환경에 거주한다.

#### 핵심 활동

- 현장 구축 시 거버넌스 구조 및 서비스 제공자와 함께 현장 기반의 안전 계획을 개발하고, 이 계획을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한다.

- SMA가 안전 및 안보 현황 조사 및 대응과 관련해 충분한 역량을 갖추도록 보장한다.
- 외부 및 내부 위협과 그러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평가할 수 있도록 위험 기반 접근법(risk-based approach)을 활용한다.
- 현장에 위협이 존재하는지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부상하는 위협에 따라 비상 계획을 업데이트 한다.
- 필요할 경우, 재배치(relocation) 계획을 개발한다.
- 서비스 제공자, 현장 설계자, 커뮤니티 거버넌스 구조와 협력하여 현장에 대한 정기적인 관찰 및 안전 감사를 시행하여 물리적 기반 시설과 커뮤니티 활동을 모두 평가한다. 안전 감사를 통해 파악한 '위험 요소(red flags)'를 다룰 대응 계획을 개발한다.
  - 보호 담당 동료들과 협력하여 젠더기반폭력(GBV) 및 기타 보호 관련 위험을 안전 감사 대상에 포함시키고 필요를 바탕으로 한 조치가 마련되도록 보장함으로써 위험을 경감하고 위협에 대응한다.
  - 현장 내부 및 현장 전역에 걸쳐 인구 밀도를 모니터링한다.
  - '위험 요소'에 대한 대응으로서 현장 재편 또는 현장 내에서의 인구 재정착을 고려한다.
  - 필요할 경우, 안전하지 않은 지역에 위치한 가구 또는 서비스를 위해 재배치 계획을 시행한다.
  - 적절한 수준의 안전 위원회를 설립하여 해당 현장에 존재하는 위협 또는 위험을 다룬다.
  - 현장 거주 인구에게 위험을 알릴 수 있도록 정보 채널을 구축하고 유지관리한다.
  - SMA 직원을 대상으로 안전 및 안보에 관한 교육을 충분히 제공하고, 적절한 안보 조치를 마련한다.
  - 적절한 연계 메커니즘을 따른다.

## 핵심 지표

- 안전 감사를 통해 권고받은 경감 조치 중 현장 유지관리 및 개선 계획에 통합된 조치의 비율(%) 또는 현장 유지관리 활동을 통해 다루어진 조치의 비율(%)

## 세부 지침

1. **안전 감사(Safety audits)**는 청소년, 노인, 특정한 필요를 가진 사람 등 위협에 처한 사람을 포함한 모든 집단이 밤낮으로 현장 시설을 이용할 때 안전 및 안보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를 SMA 및 서비스 제공자가 이해하도록 설계한 도구이다. 상황에 따라 안전 감사는 보호 전문가 또는 특별 교육을 받은 담당자와 함께 수행해야 한다. 안전 감사 결과, 관찰 모니터링, 그리고 결과에 대한 매핑은 가능할 경우 현장 설계자 및 서비스 제공자와 협력하여 일체의 우려 사항을 다루기 위한 적절한 개입 조치를 개발할 때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개입 조치에는 필요한 핵심

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필요에 따라 현장의 일부 구역을 확장 또는 축소하거나, 현장 내 과밀 지역과 비교적 덜 활용되는 지역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교통 시설과 생계 수단의 위치를 변경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다.

2. 안전 개입의 일환으로 더 많은 **조명시설**이 설치될 수 있지만, SMA와 서비스 제공자는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의도치 않은 결과를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커뮤니티 협의는 해결책에 포함되어야 할 핵심적인 부분 중 하나이다.
3. **이재이주 가구를 현장 내 다른 구역으로 재배치**하는 것은 매우 복잡한 일이며, 기존의 커뮤니티 구조와 역량을 약화할 수도 있는 많은 보호 관련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다른 대안이 존재하지 않고 모든 당사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경우에만 시행해야 한다.
4. 현장 내 특정 구역(예: 시장과 급수처 근처)의 **인구 과밀** 문제는 GBV나 기타 형태의 보호 관련 위험을 증대시키는 핵심 요소일 수 있다. 관찰 감사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지역과 잠재적인 해결책을 이해하고 그에 주목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5. 안전과 존엄에 대해 여성 및 아동과 **협**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그러한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사회적 위계와 힘의 역학관계를 인지하고 의사결정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함으로써 여성과 아동이 현장 내 시설에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강화해야 한다.
6. **안전 위원회(safety committees)**는 현장 내에 존재하는 모든 형태의 안보를 포괄할 수 있는 광범위한 용어이지만, 일반적으로 화재 예방, 수색 및 구조, 응급처치 등을 위한 자발적인 조치와 관련되어 있다.

⊗ 『Sphere 핸드북(The Sphere Handbook)』의 **셸터 장도 참고한다.**

⊗ 『**캠ป์ 관리 툴킷(Camp Management Toolkit)**』 제12장의 **안전 및 안보 체크리스트뿐만 아니라 캠ป์ 안전 및 안보에 관한 추가 내용도 참고한다.**

## 기준 3.2: 적절한 환경

모든 현장 거주민이 물리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적절한 환경에 거주한다.

### 핵심 활동

- 커뮤니티 참여를 증진하기 위한 현장 개발 위원회를 설립한다.
- 현장 계획이 현장 내 모든 집단의 필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커뮤니티와 협의한다.

- 적절한 시설 이용과 관련해 현장 거주 인구가 갖고 있는 기대를 파악하고, 사람마다 각기 다른 기대를 가질 수 있음에 유의한다.
- 현장 거주 인구의 필요와 역량이 위기 발생 이전 상황과 비교했을 때 어떻게 달라졌는지 조사 한다.
- 이재이주 및 수용 커뮤니티의 즉각적인 필요와 역량을 파악하고, 위험에 처한 집단이 가진 특정한 필요를 고려한다.
- 가장 취약한 인구가 현장 계획 수립 단계에서 자신의 필요를 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들의 필요가 현장 시설 설계 및 유지관리에 반영될 수 있도록 옹호 활동을 벌인다.
- 현장 인구 내 장애인 집단과 소통한다. 특정한 필요를 가진 인구를 위한 담당자를 현장 관리팀 내에서 지명한다. 가능하다면 그들의 필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현장 시설을 개조하거나 특수한 접근 방법에 대해 협의한다.
- 현장 계획 수립에 대한 커뮤니티의 참여를 모니터링하여 커뮤니티의 지속적인 참여와 적절한 자원 활용을 보장한다.
- 현장 전체에 적용되는 주소 지정 시스템을 계획하고 구축한다.
  - 글을 읽지 못하는 거주민을 고려한다.
  - 이재민 임시수용시설, 트랜짓 센터 등의 시설에서는 주소 지정 시스템이 아닌 방 배정(room allocation) 방식을 활용한다.
- 현장 운영 주기 전반에 걸쳐 현장을 계획, 수립, 유지관리하기 위한 충분하고 적절한 분야별 전문 지식이 활용되도록 옹호 활동을 벌인다.
  - 이재이주 및 수용 커뮤니티의 전문 분야의 역량을 조사하고 개발한다.
- 커뮤니티 리더십 구조, 국가 또는 현지 당국, 서비스 제공자와 협력하여 현장 계획에 따라 현장을 구축한다.
  - 피해인구가 교육 및 생계 기회를 포함한 필수 서비스와 시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옹호 활동을 벌인다.
  - 커뮤니티, 현장 설계자, 서비스 제공자와 협력하여 현장 개선 작업 중에 발견한 문제를 다루고 해결한다.
  - 서비스 제공자를 포함한 핵심 활동가들과 함께 필수 서비스 및 시설이 적당한 거리에 위치할 수 있도록 하며 그러한 서비스와 시설에 접근하는 데 필요한 안전한 이동 및 교통수단을 구축한다.
  - 필수 서비스와 생계 관련 기회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현장 설계자, 분야별 전문가, 서비스 제공자와의 조정을 통해 그러한 서비스와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한다.
  - 현장 설계자와의 협력을 통해 서로 상충하는 기술적 요건들(technical requirements)의 우선 순위를 정하여 적절하게 순서를 매긴다.
- 사망자를 애도하고 매장하는 시설이 문화적 규범을 따르도록 보장하고, 그러한 규범이 제각기 다를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한다.

- 현장의 환경 영향을 고려하고 환경 파괴를 제한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한다.
- 종교적 관행과 의식, 공연 예술, 문화 행사와 축제 등을 진행할 수 있도록 문화 시설을 위한 공간과 적절한 장소를 마련한다.
- 커뮤니티가 관리하는 모든 시설은 유지관리되며 추후 시설의 폐쇄도 고려될 수 있음을 커뮤니티 대표자와 함께 명확히 한다.
- 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한 옹호 활동이나 직접 활동을 통해 기본적인 현장 기반 시설을 유지관리 한다.
  - 사업 계획서에 시설의 기본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 항목을 포함시킨다.

## 핵심 지표

- 모든 이재이주 집단의 필요를 충족하도록 커뮤니티의 참여와 적절한 분야별 전문 지식을 통해 개발한 합의된 현장 계획이 존재한다.
- 수용 커뮤니티를 포함한 현장 인구 중 현장이 자신들의 필요, 안전, 우선순위를 반영한다고 응답한 인구의 비율(%)

## 세부 지침

1. **현장 계획 수립 또는 현장 개선**과 관련하여 현장 관리자 및 현장 관리팀이 수행해야 할 역할은 현장 거주 인구 및 수용 커뮤니티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가 현장 계획 개발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다. 현장 관리자는 현장 거주민과 수용 커뮤니티가 현황 조사, 협의회, 표적집단 토론, 현장 방문 등의 참여적 방법을 통해 현장 계획 수립 및 현장 개선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정한 필요가 있는 인구와 소외된 집단의 필요가 반영되고 다루어질 수 있도록 그들과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
2. **현장 개발 위원회**에는 적절한 현지 또는 국가 당국, 클러스터/분야 주관, 현장 설계자, 서비스 제공자, 수문학자, 엔지니어, 현장 거주 인구, 지리 정보 시스템(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GIS) 전문가, 공중보건 전문가, 변호사 및 토지 제도 전문가, 기타 적절한 분야별 전문가 등이 포함된다. 현장 개발 위원회는 『Sphere 핸드북(The Sphere Handbook)』에 수록된 기술 분야 기준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3. **이미 자생 정착지가 형성된** 곳뿐만 아니라 지역 기반 또는 이동식의 캠프 관리가 진행되는 곳에서 사람들은 정착 초기부터 자연스럽게 소유 의식을 갖게 될 것이다. 이 경우 광범위한 협의 없이는 재계획(replanning)의 추진이 훨씬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현장 개선을 점진적으로

진행해야 할 것이다.

4. **도시에서의 이재이주 상황**에서는 불확실한 토지 소유 계약과 공간의 부족으로 인해 대대적인 현장 개선 및 유지관리 작업이 거의 불가능하다. 이러한 경우, SMA는 낮은 수준의 기술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현장을 개선할 수 있으며 이와 함께 주거, 토지, 재산에 대한 실사 과정을 진행하고 권한을 가진 현지 당국과 토지 관련 옹호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또한 특정한 도시 환경에서 학교, 커뮤니티 센터, 1차 의료기관 등의 공동 시설이 1개 이상의 이재이주 현장 및 수용 커뮤니티의 인구가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마련될 수 있도록 옹호 활동을 벌일 수 있다.
5. **지역 기반의 CCCM 접근법**은 현장 관리 서비스 제공 지역, 인근 지역, 대상 커뮤니티와 함께 개인 또는 가구를 대상으로 사회적 분석과 서비스 제공을 결합하여 커뮤니티 지리에 따른 지원을 제공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한다. 재난 발생 직후에는 철거 및 잔해 제거 작업을 시행해야 하며, 이와 더불어 피해인구에게 임시 쉼터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즉각적인 필요를 충족해야 한다. 어떤 지역이나 건물을 가장 먼저 깨끗이 정비해야 하는지, 어떤 지역이나 건물을 임시 쉼터로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반드시 합의해야 한다.
6. 또한 법적 규제에 따라 재난 후 범죄 수사, 보존해야 할 역사 유적지, 사유 재산 및 공유 재산 간의 우선순위 등도 고려해야 한다. 이들은 궁극적인 재건과 임시 쉼터 후보지 물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하는 주요 요소가 될 수 있다.
7. 현장 계획 수립 시에는 **복합적 혹은 연속적인 재난**도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현장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지진과 그에 뒤따르는 폭우와 여진 등 복합 재난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현장에 대해서는 수차례의 기술적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8. 도시 환경에 위치한 대피 센터를 관리하는 현장 관리자는 대피 센터가 재개통된/복구된 도로망 및 모든 공공 서비스(예: 한쪽에 위치한 학교와 다른 쪽에 위치한 시청)와 연결될 수 있도록 **옹호 활동**을 벌여야 한다. 체육관 같은 집단 쉼터의 지속적인 활용에 여진의 영향과 기타 연이은 재난이 막대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9. 서비스 제공자가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이 안전하게 시설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존중하는 기술 관련 선택지를 개발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한다. 그러나 아동, 노인, 이동이 제한된 인구를 위해 **특수한 또는 조정된 포괄적인** 설계와 공사가 필요할 수도 있다. 지원 사업이 중복되는 지역에서는 파트너들이 서로 만남을 갖도록 SMA가 조정해야 한다. 연계 경로는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고 확인해야 한다.
10. 『Sphere 핸드북』에 수록된 공간 계획 수립 및 주제별 지표를 활용하여 각 현장 구역에 적절한 **공공 시설의 비율**을 결정해야 한다.
11. 현장 계획 수립 및 현장 구축은 위험 상황이 발생한 직후 커뮤니티가 **특정한 관행**, 전통, 지식과 기술의 전승을 지속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있어서 중대한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므로 남성, 여성, 취약 집단뿐만 아니라 문화적 지도자와 대표자, 소외되고 낙인이 찍힌 집단도 거버넌스 구조에 반영해야 한다.



12. 사람들이 매일 **현장 내 공간을 활용하는 방식**은 그들 각자의 문화, 비상사태의 진행 단계, 하루 또는 한 해 중의 구체적인 시간을 바탕으로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이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할 것이다. 현장 거주민의 일상생활을 이해하는 것은 그들의 필요를 충족하고 현장 전반에 걸쳐 안전을 보장하는 핵심 요소가 될 수도 있다.
13. **이동식 현장 관리팀**도 현장 개선에 참여할 수 있다. 이동식 관리팀은 필수적인 현장 유지관리 활동이 필요한 모든 곳에서 그러한 활동을 촉진하고, 최소한의 생활 수준과 보호를 지원할 수 있도록 쉼터 개선 사항을 조정하거나 직접 개입할 수 있다. 이동식 현장 관리팀은 다음과 같은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 각 가구의 내부 공간을 분리할 칸막이를 제공하거나, 창문을 설치하고 문을 수리한다.
  - 잔해 제거나 간단한 위생 설비 수리를 통해 현장 내 위험 요소를 줄인다.
  - 비공식 현장에 거주하는 이재이주 커뮤니티를 위해 여러 가지 방식(예: 임대 계약 또는 점유 계약에 대한 권리 보장 등)으로 거주 안정성을 증진한다.
- ⊗ 『Sphere 핸드북(The Sphere Handbook)』의 쉼터 및 정착지 기준 2: 위치 및 정착지에 대한 계획을 참고한다.
- ⊗ 『캠프 관리 툴킷(Camp Management Toolkit)』의 현장 구축 체크리스트뿐만 아니라 현장 관리자 및 현장 계획 수립에 관한 내용도 참고한다. 또한 『캠프 관리 툴킷』 제2장의 캠프 기반 시설 유지관리 보장을 위한 체크리스트도 참고한다.
- ⊗ 아동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아동 보호 분야 활동가들과의 협력에 관한 추가 내용은 『아동 보호를 위한 최소기준』의 캠프 관리 및 아동 보호에 관한 기준 23을 참고한다.
- ⊗ 이재민 임시수용시설 및 캠프 외부 환경에서의 현장 개선에 관한 추가 정보는 CCCM 클러스터의 『Management and Coordination of Collective Settings Through Mobile / Area Based Approach Working Paper』를 참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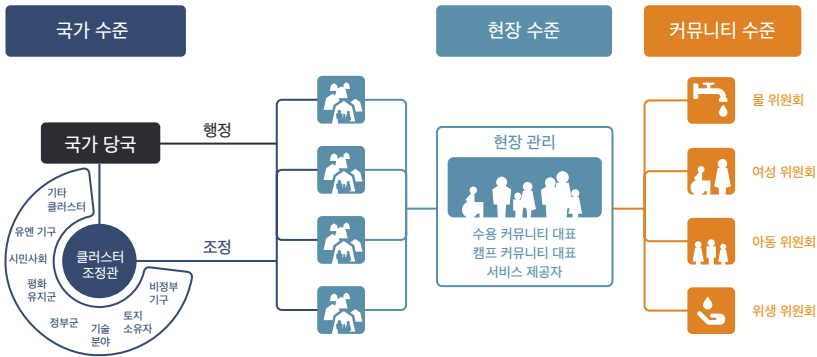
# 현장 서비스 조정 및 모니터링

## 4. 현장 서비스 조정 및 모니터링

현장 조정은 합의된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보 공유 및 계획 수립 과정이다. 현장 조정은 적절한 인도주의 기관과 현장 거주 인구를 결집함으로써 현장 거주 인구가 기본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상호 보완적인 인도주의 활동을 보장한다. 조정의 목표는 효율성과 책무성이 보장 되는 방식으로 현장 거주 인구에게 인도적 지원과 보호를 제공하는 것이다. 현장에서도 기본적인 생활 수준은 유지되어야 하며, 현장 거주 인구의 기본적인 인권을 위한 충분하고 동등한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인도적 지원 서비스는 수용 가능성, 활용성, 적절한 유지관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현장 인구에 대한 관심과 책무성을 바탕으로 계획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서비스는 반드시 전문분야에서의 우수성, 현장의 물리적 및 환경적 특성에 대한 타당한 이해, 문화적 관습 및 규범, 취약한 사용자 집단의 특정한 필요와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계획되고, 시행되며, 모니터링되어야 한다. 현장 관리 기관(Site Management Agency, SMA)은 강력한 전문분야 지원의 필요성을 과소평가하지 말아야 한다. SMA와 서비스 제공자는 충분히 숙련된 직원이 효과적인 프로그램 설계, 전문분야 지도감독, 모니터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 참여의 단계



SMA는 현장에 국한되지 않는 조정 환경에서 활동할 것이다. 조정은 지역 및 국가 수준에서의 현장 간에도 이루어진다. 현장 관리팀이 여러 지역을 담당하는 지역 기반 상황을 제외하고, 현장 관리팀의 주요 역할은 여러 현장 간의 조정이 아닌 하나의 현장 내에서 조정 역할을 하는 것이다. 또한 SMA는 현장 환경에 대해 국가 조정 메커니즘에 보고를 해야 할 것이다.

현장 수준에서의 서비스 제공자는 더 광범위한 조정 환경에서 활동할 가능성이 높다. 즉 상황에 따라 국가 수준에서, 혹은 클러스터 또는 주제별 조정 플랫폼과 같은 지역 수준에서 활동할 수도 있다. 이러한 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메커니즘에 자신들의 활동을 보고해야 할 것이다.

조정 과정의 성공 여부는 국가 당국, 캠프 조정 및 캠프 관리(CCCM) 클러스터/분야 주관, 서비스 제공자, 현장 거주 인구, 수용 커뮤니티 등을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투명하고 효과적인 파트너십을 개발하고 유지하는 것에 달려 있다.

⊗ 『인도적 지원의 핵심 기준(CHS)』 서약 1, 4, 6 참고.

## 기준 4.1: 현장 조정

이재이주 및 수용 인구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서비스를 조정한다.

### 핵심 활동

- 현장 전역에서 시행되는 모든 활동 및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전담하는 담당자로 활동한다.
- 모든 이해관계자(누가, 무엇을, 언제)를 매핑하고, 이해관계자들 간의 업무 분담 방식을 명확히 정하고 합의하는 것을 돕는다.
- 적절한 국가 및 현지 당국과의 개방적인 의사소통 및 조정 채널을 유지관리한다.
- 수용 인구와 좋은 관계를 맺고 유지하면서 그들이 현장 전반의 작업과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현장 수준의 이해관계자들을 정기적으로 소집해 정보를 공유하고, 우려 사항을 수집하고, 공동의 결정을 내리며, 인도주의 기관에 최신 정보를 전달한다.
  - 회의 이외의 다양한 정보 공유 수단을 활용한다.
- 현장 운영 주기 전반에 걸쳐 보호 및 지원 활동을 계획하고, 시행하며, 성과를 모니터링한다.
  - 안전, 보호, 존엄을 위한 기준을 이해하고, 이 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다른 분야들의 역할도 유념한다.
  - 필수 서비스가 합의한 기준에 따라 정착지에 마련되도록 보장한다.
- 작업 계획, 최소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능력, 현장에서의 변화에 대한 대응과 관련된 정보를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한다.
  - 클러스터 또는 인도적 지원의 각 분야, 서비스 제공자, 현장 거주 인구와의 협의를 통해 분야별 최소 품질 기준을 수립한다.
- 항구적 해결책 모색이 현장 거주 인구와 함께하는 활동 그리고 그들을 위한 모든 인도적 지원 활동에 포함될 수 있도록 옹호 활동을 벌인다.

- 현장 대표자와 거버넌스 구조가 전반적인 조정 메커니즘 및 분야별 조정 메커니즘에 포함될 수 있도록 옹호 활동을 벌인다.

## 핵심 지표

- 조정 회의에 모든 이해관계자 또는 이해관계자 집단이 참석한다.
- 조정 회의에 이재이주 대표자와 수용 커뮤니티 대표자 모두가 혹은 둘 중 한 대표자가 참석한다.
- 이재이주 대표자 또는 수용 커뮤니티 대표자와 공동으로 개발한 의제의 비율(%)
- 협의한 기간 내 진행하여 완료한 활동 계획(action points)의 비율(%)

## 세부 지침

1. 회의가 의사결정에 유용한 수단이 될 수는 있지만, 조정이 회의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문제가 신속히 다루어지고 해결될 수 있도록 의사결정자들이 회의에 참석해야 한다. 그러나 수준에 따라 별도의 회의를 진행하는 것은 시간 소모적일 수 있다. 또한 조정의 목적은 의사결정을 지연시키거나 인도적 지원을 비효율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다. 조정 구조(coordination structures)를 모든 수준에 똑같이 적용할 필요는 없다.
  2. 민감한 사안의 경우, 파트너와의 양자 회담 등 다른 형태의 조정이 유용하고 적절할 수 있다. 어떤 사안을 신중하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3. **캠프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현지 당국을 포함한 보다 광범위한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 정보 교환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 경우 현장 관리팀의 역할은 이재이주 및 수용 커뮤니티를 포함한 커뮤니티 구성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소집하고 연결함으로써 현장/지역 수준의 조정을 지원하고 커뮤니티 및 조정 메커니즘을 강화/구축하는 것이다.
- ⊗ 『**캠프 관리 툴킷(Camp Management Toolkit)**』 제4장의 **조정 체크리스트**뿐만 아니라 **조정 도구 및 도전과제에 관한 추가 정보도 참고한다. 또한 『캠프 관리 툴킷』 제2장의 지원 및 서비스 제공의 조정과 모니터링도 참고한다.**
  - ⊗ 글로벌 CCCM 클러스터의 Area-based Approach Working Group 활동 및 캠프 외부 상황에서의 **조정**에 관한 추가 정보는 CCCM 웹사이트(<https://ccmcluster.org/global/Area-based-Approach-Working-Group>)에서 확인할 수 있다.
  - ⊗ **조정 시 여성의 역할에 관한 추가 정보는 노르웨이 난민 위원회(NRC)의 『Improving Participation and Protection of Displaced Women and Girls Through Camp Management Approaches』에서 확인할 수 있다.**
  - ⊗ **현장 관리자의 조정 방식에 관한 영상은 웹사이트([https://www.youtube.com/watch?v=7xlp6vmo\\_L0](https://www.youtube.com/watch?v=7xlp6vmo_L0))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기준 4.2: 현장 서비스 현황 조사, 모니터링, 보고

구축되어 있는 시스템을 통해 현장 거주 인구의 필요가 모니터링되고 보고된다

### 핵심 활동

- 담당하는 현장 거주 인구와 그들의 필요 및 역량을 확인한다.
- 현장 거주 인구가 가진 공백과 필요를 모니터링하는 SMA의 역할에 대해 서비스 제공자가 인지하게 한다.
- 현장 거버넌스 구조와 서비스 제공자 사이에 의사소통 채널을 구축하고 유지관리한다.
- 현장 프로파일(profile)을 위해 합의된 통일된 현황 조사 도구를 생성 또는 개발한다.
  - 클러스터 또는 각 분야 및 서비스 제공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분야별 지표를 정한다.
- 현장 거주 인구 또는 현장 환경과 관련해 중요한 변화가 발생한 이후에는 그들의 필요와 역량을 이해할 수 있도록 공동의 다분야 간 현황 조사를 실시한다.
  - 현장 거주 인구가 모니터링 서비스에 참여하게 한다.
- 현장 전역에서의 서비스 필요와 관련된 데이터를 수집하고 정보를 관리한다.
  - 서비스 제공자와의 조정을 통해 지원 및 서비스 제공 상의 공백이나 중복 사례를 파악하고 그에 대응한다.
  - 개인 및 가족 관련 정보에 기밀유지 및 데이터 보호 정책을 적용한다.
  - 분야별 최소 품질 기준을 확인한다.
- 업무의 중복을 막기 위해 가능하다면 현장에서 활동하는 서비스 제공자들이 데이터 공유 협약을 맺도록 지원한다.
- 현장 기반 정보 관련 피드백을 해당 국가의 조정 메커니즘에 제공한다.
- 현장 거주민이 정확한 정보를 정기적이고 시의적절하게 접하여 귀환, 통합, 재정착과 관련된 개인 및 가족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안내한다. 정보가 적절한 언어와 형식으로 제공되도록 보장한다.
  - 귀환이나 통합 또는 재정착이 가능한 지역에 대한 모든 현황 조사 결과를 현장 거주 인구와 공유함으로써 그들이 각 선택지의 안정성을 독립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한다.
  - 취약한 인구 집단이 전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서비스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자와 함께 핵심 메시지를 개발한다.

- 최소한 법률(보호), 보건의로, 교육, 급수, 에너지 서비스, 생계 기회, 시장, 종교 및 문화 관련 기관과 정보를 연계한다.
- 가구 수준에서 정기적인 의도 설문조사(intention surveys)와 여타 형태의 상담을 진행함으로써 각 가구가 의사결정을 하는 방식과 그들이 선호하는 선택지에 대한 방해 요인의 존재 여부를 확인한다.
- 유연비어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그에 대응한다.
- 모든 이동의 시기와 조건 등 해결책 선택과 관련해 커뮤니티가 보이는 경향을 커뮤니티 참여 메커니즘을 통해 모니터링한다.

## 핵심 지표

- 현장 관련 지표에 대해 파트너와 합의한다.
- 합의한 기간 내에 업데이트된 현장 프로파일의 비율(%)
- 정보에 기반하여 귀환, 통합, 재정착에 대한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현장 거주 인구의 비율(%)
- 선택 가능한 항구적 해결책 관련 정보에 접근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 현장 거주 인구의 비율(%)

## 세부 지침

1. SMA는 현장 거주 인구의 공백, 필요, 역량을 알리고 강조하기 위해 현장에서 어떤 정보를 수집 할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SMA가 내놓을 것으로 기대되는 산출물(outputs)에 대한 보고 내용은 상황에 따라 다를 것이다. 최소한 SMA는 현장에 있는 인구, 그 인구가 가진 필요, 그러한 필요를 충족하는 기관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한다. 또한 SMA는 현장 환경에서 성별, 연령, 인구 집단에 따른 차이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야 한다.
2. SMA는 활동 및 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할 공백에 관한 보고서를 이해관계자들에게 제공할 책임이 있다. 이는 특히 서비스 제공자가 모니터링을 자주 시행하지 못할 수 있는 비공식 현장이나 이동식 팀이 활동하는 환경에서 중요하다.
3. 연계 경로는 보건의로, 안보, 젠더기반폭력(GBV), 보호, 아동 보호, GBV 아동 생존자, 실종자 등과 관련된 핵심적인 전문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일 수 있다.
4. 제3의 이해관계자가 정보를 수집하고 기록하는 경우, 데이터의 민감성(sensitivity)에 따라 SMA 직원이 데이터 수집팀에 합류해야 한다. 어떤 정보를 누가 수집하는가에 관한 사전 합의는 현장 커뮤니티가 데이터 수집으로 인한 피로에 시달리지 않도록 보호하고 유사한 데이터가 중복되는 경우를 예방해 주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 더 자세한 내용은 기준 1.4를 참고하도록 한다.

5. 표적집단은 풍부하고 상세한 정보와 깊은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다. 잘 운영되는 표적집단은 참가자들을 편안하게 하고 그들이 자기만의 언어로 신중하게 질문에 대답하고 그 대답에

의미를 더할 수 있게 하는 수용적인 환경을 조성한다. 표적집단이 잘 운영되려면 계획 수립이 선행되어야 한다.

6. **귀환, 통합, 재정착**에 관한 정보를 현장 거주 인구와 공유할 때 그들의 기대치를 비현실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지 않으려면 신중을 기해야 한다. 귀환, 통합, 재정착이 이루어지는 지역 내 개발 프로그램에 관한 모든 정보 수집은 유용할 것이다. 해결책을 바라는 현장 거주 인구의 욕구를 이해 하고 유연비어를 다루는 일은 세심하게 진행해야 할 것이다.
7. 정기적인 서비스 모니터링이 시행되고 있는 경우, **다분야 현황 조사(multi-sectoral assessments)**는 현장 인구나 현장 환경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이후에만 필요하다. 현장 관리 직원은 기관에서 진행하는 대규모 현황 조사를 계획하는 일에 참여해야 한다.
8. **캠프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위와 같은 지침이 적용된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에서는 어떤 정보를 왜 그리고 어떻게 수집할지를 이해관계자들과 합의하는 데 있어서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 ⊗ 『**캠프 관리 툴킷(Camp Management Toolkit)**』 제4장의 **캠프 서비스 모니터링에 관한 추가 정보도 참고한다.** 또한 『**캠프 관리 툴킷**』 제2장의 **지원 및 서비스 제공의 조정과 모니터링도 참고한다.**
  - ⊗ **현장 구조, 서비스, 공간에 대한 아동의 동등한 접근권을 지원하는 핵심 활동 관련 추가 정보는 『인도적 활동 시 아동보호를 위한 최소기준(Minimum Standards for Child Protection in Humanitarian Action)』의 기준 23: 캠프 관리 및 아동 보호를 참고한다.**
  - ⊗ **기준 2.1 커뮤니티 참여도 참고한다.**

### 기준 4.3: 연계 경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전문 서비스(specialised service) 제공자에게 연계한다.

#### 핵심 활동

- 인식 제고를 통해 현장 인구 및 현장에서 활동하는 모든 기관이 보건의로 서비스, GBV, 아동 보호, 기타 보호 관련 서비스를 위한 핵심적인 연계 경로를 알 수 있도록 한다.
- 서비스 제공자들의 서비스가 중복되는 경우를 최소화하고 연계 경로를 효율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
- SMA 직원을 대상으로 핵심적인 연계 경로에 관한 교육을 제공하고, 연계 경로에 접근하는 방법을 SMA 직원이 적절하고도 윤리적인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보장한다.



- 연계 데이터베이스 활용 등 연계에 대한 후속 절차가 마련되도록 보장한다.
- 업데이트된 모든 사례(예: 아동 보호 및 GBV 등) 관리 프로토콜을 모든 관련 파트너와 공유한다.
- 전문 서비스 또는 상황의 변화에 따른 전문 서비스의 확대를 위한 옹호 활동을 벌인다.
  - 양질의 전문 서비스를 위한 옹호 활동을 벌인다.
- 상황상 적절한 경우, 커뮤니티 거버넌스 구조 또는 대표자가 적절한 교육을 받는 것을 전제로 연계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
- 자기 연계(self-referral)를 위한 시스템을 증진한다.

## 핵심 지표

- 특정한 또는 특수한 필요를 가진 사람들이 필요한 지원과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제대로 작동하는 연계 경로가 마련되어 있다.

## 세부 지침

1. 연계 경로는 전문 기관들이 개발하지만, SMA는 현장에 상주(또는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전문 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커뮤니티에 시의적절하게 제공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연계 경로는 보건의료, 안보, GBV, 보호, 아동 보호, GBV 아동 생존자, 실종자 등과 관련된 핵심적인 전문 서비스에 필수적일 수 있다.
2. 특히 여성과 여아 같은 취약 집단이 직면한 위험 요소와 그러한 위험의 원인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는 효과적인 예방 조치에 있어서 필수적이다. SMA는 관련 당국 및 보호 관련 활동가와 함께 현장 수준에서 활동하면서 모든 현장 거주민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
3. GBV 생존자는 선택 가능한 사항, 이용 가능한 서비스, 그러한 서비스의 잠재적인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아야 한다. 현장에서 활동하는 인도주의 기관과 핵심 서비스 제공자의 역량이 부족할 경우에는 이미 존재하는 연계 경로를 파악하는 것이 때로는 더 어려울 수 있다. 인도주의 기관과 핵심 서비스 제공자는 아무 활동도 하지 않으면서 단순히 현장 입구에 기관의 깃발이나 팻말만 걸어 둘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실제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인도적 대응 역량이 부족할 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것보다는 가지고 있는 자원을 공유하거나 또는 인도적 대응 역량을 갖추고 있지 않다고 말하는 편이 낫다.

⊗ 『Sphere 핸드북(The Sphere Handbook)』 보호 기준 3도 참고한다.

철수 및 이전

## 5. 철수 및 이전

인도주의 상황이 변화하면 현장 운영 주기 동안 최소한 한 번은 여러 현장의 관리 주체가 한 기관에서 다른 기관으로 이전(transition)된다. 현장 관리 책임을 이전받게 되는 기관은 국제 또는 국내 비정부기구일 수도 있고, 국가 또는 현지 당국이 될 가능성도 높으며, 이들 기관은 다른 여러 권한에 더해 현장 관리 역할까지 맡게 될 수 있다. 또한 이전은 보다 광범위하게 일어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자와 기타 이해관계자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새로운 현장 관리자로의 이전은 현장 폐쇄로 이어지지 않으며 보호와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현장 폐쇄는 현장 설립 및 계획 수립과 마찬가지로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현장 폐쇄는 다양한 이유로 발생할 수 있고 다양한 방식 또는 단계에 따라 진행될 수 있다. 예컨대, 폐쇄는 조직적이고 자발적인 귀환 시도나 공여자의 지원 축소에 의해 계획적이고 질서 있게 진행될 수도 있고, 자연재해와 안보 위협 또는 정부의 강압으로 인해 갑작스럽고 무질서하게 진행될 수도 있다. 경우에 따라 인도적 지원과 서비스가 단계적으로 중단되더라도 현장의 기반 시설을 철거하거나 커뮤니티가 모이는 장소로서 현장이 가진 기능을 없애는 등 현장 자체가 폐쇄되지는 않는다. 경제적 또는 사회적 활동이 이루어짐으로써 현장 자체가 독자적으로 생존 가능한 영구 정착지나 마을 또는 장소가 될 수도 있다. 또한 현장이 간단히 과거에 수행하던 기능으로 돌아가게 될 수도 있다. 강제 귀환을 수반하는 부분적인 또는 완전한 비계획적 폐쇄를 진행하려면 피해인구에 대한 보호를 보장하는 전략적이고 적극적인 관리 메커니즘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신중한 계획 수립과 광범위한 조정은 매우 중요하며, 이는 국가 당국 및 토지의 법적 소유주를 포함한 핵심 이해관계자들과의 협력을 통해 현장 관리팀이 수행해야 한다. 이들은 현장 거주 인구 및 수용 인구가 현장 폐쇄 과정에 완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이재민 임시수용시설로 임시 사용되는 동안 손상된 건물은 현지 커뮤니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장 폐쇄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자산의 완전한 사용 중단(decommissioning)이나 복구(rehabilitation)와 양도(handover)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혹은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관련 이해관계자들과 명확히 확인하고 합의해야 한다. 현장 구축/개선과 폐쇄에 관한 계획 수립은 처음부터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는다.

현장 관리 기관(Site Management Agency, SMA)과 캠프 조정 및 캠프 관리(CCCM) 클러스터 조정관은 2차적인 이재이주가 발생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하는 고유의 위치에 있다. 이러한 2차적인 이재이주는 귀환 또는 재정착 지역이 안전하고 존엄성이 지켜지는 귀환에 부적합한 상황에서 진행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이유는 안보, 거주 및 생계 관련 기회, 기본 서비스, 사회적 보복 등과 연관되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SMA가 성공적으로 상황을 모니터링했을 경우, 현지 당국 또는 관련 당국이 이재이주 인구가 맞닥뜨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옹호 활동을 벌여야 한다.

## 기준 5.1:

### 새로운 현장 관리 기관(SMA) 및 현장 관리팀으로의 이전

현장 거주 인구가 현장 관리 이전 기간 동안 적시에 적절한 인도적 지원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받는다.

#### 핵심 활동

- 새로운 현장 관리 기관(Site Management Agency, SMA)과 함께 이전 또는 양도 계획을 세운다.
  - 최소한 이전 또는 양도 계획은 인도적 지원 서비스가 현장 내에서 지속적으로 제공되도록 보장 해야 한다. 기존의 서비스 제공자를 이 과정에 참여시켜야 한다.
  - 기반 시설 및 장비 양도 시 핵심 자원, 업무, 기술적 요건 등에 관한 세부 사항도 이전되도록 보장한다.
  - 이전 또는 양도 계획에 복구 및 사용 중단에 대한 필요를 포함시킨다.
- 이전 과정에 기존의 현장 대표 조직(representation structures)을 포함시킨다.
- 취약 인구의 필요를 다룰 수 있도록 새로운 SMA와 협력하여 사건별 실행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현장 관리의 양도로 인해 취약 인구가 더 많은 위험에 처하거나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보장한다.
  - 취약 인구나 그들의 돌봄 제공자가 새로운 SMA에 대한 정보와 서비스의 지속적인 접근성에 대해 적절히 안내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
- 새로운 SMA와 협력하여 그들이 역량과 전문 기술을 충분히 갖출 수 있도록 보장한다.
  - 역량 개발은 모든 분야를 아우러야 하지만 특히 토지 소유, 기반 시설 유지관리, 보호 및 인도주의 원칙과 관련된 사안을 다루어야 한다.
  - 새로운 SMA와 파트너십 또는 역할 공유, 멘토링, 공동 업무 수행 등을 통해 협력한다.
- 이전 또는 양도 계획에 관한 개요를 수용 커뮤니티 및 현지 당국 대표자들과 공유한다.

#### 핵심 지표

- 이전 기간 동안 제공받은 서비스에 만족하는 현장 거주 인구의 비율(%)
- 이전 또는 양도 계획을 개발하고 공유함에 있어서 커뮤니티 및 파트너와의 협의가 이루어진다.

## 세부 지침

1. 새로운 SMA는 인도주의 기관, 정부 당국(지방 또는 중앙 정부) 또는 커뮤니티 집단일 수도 있다. 기술적인 지원 및 기존 직원과 새로운 직원 사이의 공동 업무 수행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고 역량을 개발함으로써 각종 활동과 협의를 완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능하다면 새로운 SMA에 기존 직원을 유지할 것을 권고해야 하며, 이를 통해 재고용된 기존 직원은 거주 인구를 위한 서비스의 지속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억(institutional memory)과 경험을 제공하게 된다. 계획적인 양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새로운 SMA의 역량과 전문 지식에 대해 확신을 가질 수 있고, 필요할 경우 역량 계획 및 활동을 마련해야 한다. 더 신속한 양도를 위해 새로운 SMA를 위한 역량 계획이 시행되도록 보장하는 역할을 CCCM 클러스터 조정관과 클러스터 주관 기관이 맡을 수도 있다.

⊗ 기준 1.3: SMA 및 현장 관리팀 역량도 참고한다.

### 기준 5.2: 계획적 폐쇄

현장 폐쇄가 계획적이고 협의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현장 잔류 인구에게 미치는 영향이 완화된다.

## 핵심 활동

- 현장 폐쇄 계획을 재검토하고 현재 상황에 맞게 조정한다.
  - 자문 회의, 표적집단토론, 의도 설문조사를 통해 얻은 결과를 활용하여 현장 폐쇄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 적절하고 실행 가능할 경우, 귀환이나 통합 또는 재정착 현장을 직접 방문한다.
- 재정착 준비가 된 현장 거주민의 목록을 작성하되, 특히 대가족, 특정한 필요가 있는 인구, 여성가주주 가정을 목록에 포함시킨다. 이들이 적절한 방법으로 이송될 수 있도록 옹호 활동을 벌인다.
- 현장 폐쇄 계획 수립 및 이행에 현장 거버넌스 구조와 리더십을 반영한다.
- 현장 서비스가 갑자기 축소되거나 철회될 경우, 취약 인구가 어떤 사회적 안전망이라도 소속될 수 있도록 해결책을 모색한다.
- 현장 폐쇄가 계획대로 진행되는지 모니터링한다.

- 피해인가가 계속해서 피드백 및 고충처리 메커니즘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 특별한 서비스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현장 잔류 및 거주 인구를 위해 적절한 수준의 인도적 지원을 비롯한 조치를 마련한다.
- 현장 폐쇄 및 재배치에 관한 커뮤니티의 인식을 확인하고 기록할 수 있는 기존의 참여적 접근법과 도구를 활용 또는 조정한다.

## 핵심 지표

- 현장 폐쇄 계획을 도입하고 그러한 계획에 기여하는 서비스 제공 기관의 비율(%)(100% 달성 목표)
- 현장 폐쇄가 진행되는 동안 피드백 및 고충처리 메커니즘이 유지 관리된다.
- 보고되고 적절한 기관으로 연계된 현장 폐쇄 관련 보호 및 안보 문제의 비율(%)

## 세부 지침

1. 현장 구축과 마찬가지로 각각의 현장 폐쇄도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질 것이다. 커뮤니티의 참여는 순조로운 폐쇄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 요소이다.
  2. 공식 캠프를 폐쇄하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지만, 국가 차원의 철수 전략은 하나의 기관 또는 당국의 책임이 아니며 각기 다른 수준의 정부, 커뮤니티, 기관 소속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개입해야 한다.
  3. 국내이재이주민(IDPs)을 수용하는 현장의 폐쇄는 IDP 이동에 관한 정부 계획, 토지 보상, 기타 행정 문제를 고려하여 진행해야 한다.
  4. 난민을 수용하는 현장의 폐쇄에는 귀환 또는 재정착 국가와의 법적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각국의 정부가 관여할 것이다. 이 양해각서는 유엔난민기구, 난민의 출신 국가의 정부, 귀환 또는 재정착을 염두에 둔 국가가 준비한다.
- ⊗ 기준 2.2: 커뮤니티와의 정보 공유, 기준 2.3: 피드백 및 고충, 기준 2.4: 거버넌스 구조도 참고한다.
- ⊗ 『캠프 관리 툴킷(Camp Management Toolkit)』 제7장의 폐쇄 체크리스트뿐만 아니라 현장 폐쇄에 관한 추가 정보도 참고한다.
- ⊗ CCCM 클러스터의 『Camp Closure Guidelines』에 제시된 현장 폐쇄에 관한 내용도 참고한다.

## 기준 5.3: 비계획적 폐쇄(부분 또는 전체 폐쇄)

비계획적 폐쇄(강제 귀환) 및 자발적인 폐쇄에 대비하고, 이러한 폐쇄가 현장 거주 인구에게 미치는 영향을 관리하고 경감한다.

### 핵심 활동

- 현장 거주민이 기본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 서비스를 재배치 또는 재개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자와 조정한다.
  - 현장 거주 인구를 대표하여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한 옹호 활동을 벌인다.
- 폐쇄에 따른 영향을 받은 현장 거주민을 위한 대체 가능한 숙박 시설을 마련할 수 있도록 현지 및 국가 당국, 기타 이해관계자와 협력한다.
  - 거주민의 소지품과 기반 시설의 이동을 지원한다.
  - 다른 현장으로의 재배치가 필요한 현장 거주민의 목록을 작성하되, 특히 대가족과 여성가구주 가정을 목록에 포함한다. 이들이 적절한 방법으로 이송될 수 있도록 옹호 활동을 벌인다.
  - 특정한 필요를 가진 인구를 위한 숙박 시설을 그들의 필요에 맞게 조정한다.
- 기존의 정보 공유 메커니즘을 활용 또는 조정함으로써 어떤 일이 왜 일어나고 있는지에 관한 정보를 현장 거주 인구 및 서비스 제공자에게 제공한다.
- 피해인구가 피드백 및 고충처리 메커니즘을 계속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 현장 폐쇄 및 재배치에 관한 커뮤니티의 인식을 확인하고 기록할 수 있는 기존의 참여적 접근법과 도구를 활용 또는 조정한다.

### 핵심 지표

- 현장 폐쇄 또는 재배치 동안 기본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현장 거주 인구의 비율(%)
- 현장 폐쇄가 진행되는 동안 피드백 및 고충처리 메커니즘이 유지관리된다.
- 보고되고 적절한 기관으로 연계된 현장 폐쇄 관련 보호 및 안보 문제의 비율(%)

## 세부 지침

1. 분쟁 또는 자연재해로 인한 상황은 보통 예측이 불가능하다. 이로 인해 사람들은 처음에 계획했던 것보다 더 오랫동안 현장에 머물게 된다. 현장을 운영할 때에는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상황과 다양한 시나리오를 처음부터 예상하고 있어야 한다. 현장, 기반 시설, 자산의 효과적인 관리는 철수 시기를 포함한 현황 조사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현장 거주 인구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신중히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2. 현장의 강제 폐쇄와 이재이주 인구를 출신지로 강제 귀환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SMA는 그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 현장 폐쇄는 모든 이재이주 인구를 위한 영구적인 해결책 프레임워크와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 ⊗ 기준 2.1: 커뮤니티 참여, 기준 2.2: 커뮤니티와의 정보 공유, 기준 2.3: 피드백 및 고충, 기준 2.4: 거버넌스 구조도 참고한다.
  - ⊗ 『캠ป์ 관리 툴킷(Camp Management Toolkit)』 제7장의 폐쇄 체크리스트뿐만 아니라 현장 폐쇄에 관한 추가 정보도 참고한다.
  - ⊗ CCCM 클러스터의 『Camp Closure Guidelines』에 제시된 현장 폐쇄에 관한 내용도 참고한다.

### 기준 5.4: 복구 및 사용 중단

현장 복구가 현장 잔류 인구 및 수용 커뮤니티의 필요를 충족하는 동시에 현지 규제 및 환경 관련 필요를 고려한다.

## 핵심 활동

- 모든 서비스 제공자, 커뮤니티 대표자, 기타 이해관계자들과 협의하여 장비, 기반 시설, 토지와 기반 시설의 복구 지침에 관한 복구 및 사용 중단 계획을 개발한다.
  - 기반 시설 및 토지 관리와 관련해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은 계속 변화하므로 현장을 구축하는 기간과 현장을 폐쇄하는 기간에 협의를 진행한다.
  - 현장 거주 인구가 시신 매장을 위해 사용하는 땅이 확실하게 표시되어 있도록 하고 이를 복구 및 사용 중단 계획에 포함한다.
  - 보건으로 시설, 화학물질 저장소, 도살장을 비롯해 유해 폐기물 처리장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 중단 프로토콜을 마련할 것을 요청한다.



- 서비스 제공자가 모든 화장실 및 폐기물 관리 시설에 대한 사용 중단 계획을 마련하도록 요청한다.
- 환경에 가해지는 모든 부정적인 영향을 조사하고, 경감하며, 모니터링한다.
- 복구 및 사용 중단 계획을 수용 커뮤니티, 현장 잔류 커뮤니티, 현지 정부와 공유한다.
- 초기 현장 계획과 업데이트된 현장 계획 및 수용 커뮤니티와의 초기 합의를 검토하고 이를 참여적 메커니즘을 통해 커뮤니티와 재검토한다.
- 토지 및 기반 시설을 반환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상술한 수용 커뮤니티 및 현지 당국과의 합의를 재검토한다.

## 핵심 지표

- 환경과 관련된 우려 사항들이 조사되고, 완화되고, 모니터링된다.

## 세부 지침

1. 현장이 폐쇄되면 쉘터 자재, 버려진 소지품, 각종 파손품 등 대량의 다양한 폐기물이 남을 것이다. 화학물질, 배터리,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 의료 폐기물 같은 폐기물은 적절한 방식으로 처리해야 한다. 현장 폐쇄를 위한 준비에는 철거, 현장 매립, 소각 등의 청소 과정이 포함된다. 토양 및 수원 오염과 관련된 위험은 신중하게 다루어야 한다.
  2. 환경 복구가 반드시 현장을 과거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설령 그렇게 복구하는 것이 가능하더라도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모될 것이다. 그보다는 현장이 폐쇄되었을 때 커뮤니티가 기대하는 결과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더 적절할 수도 있다.
- ⊗ 『캠프 관리 툴킷(Camp Management Toolkit)』 제6장에서 환경 관련 고려사항에 관한 추가 정보를 참고한다. 또한 제7장의 폐쇄 체크리스트도 참고한다.
  - ⊗ 현장 운영 주기에 관한 계획 수립은 기준 3.2: 적절한 환경, 기준 4.1: 현장 조정, 기준 5.2: 계획적 폐쇄를 바탕으로 진행해야 한다.
  - ⊗ 급수, 공중위생 및 개인위생, 쉘터, 정착지, 보건의료 기반 시설의 사용 중단 및 복구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 『Sphere 핸드북(The Sphere Handbook)』의 기술 분야 관련 장을 참고한다.

부록 1 -  
장애를 포괄하기  
위한 모니터링  
체크리스트

---

# 부록1 - 장애를 포괄하기 위한 모니터링 체크리스트

현장의 포괄성은 어떻게 모니터링할 수 있을까? 이 체크리스트는 모든 것을 빠짐없이 포괄하는 완전한 체크리스트도 아니고, 참여적 접근법을 대체하기 위한 것도 아니다. 그러나 현장의 전반적인 포괄성을 조사할 의지가 있는 현장 관리자는 이를 보완적인 도구로 활용할 수 있고 또는 장애인을 위한 포괄적인 전략 개발을 지원하는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

포괄성을 모니터링하는 데 있어서는 성별, 연령, 장애 여부에 따른 데이터 세분화가 중요할 것이다. 상황이 적절하고 현황 조사와 분석 및 대응 역량이 갖춰져 있는 경우, 현장 관리 기관(SMA)에는 장애에 관한 워싱턴 그룹(Washington Group) 설문지의 간소화 버전 등 인도주의 상황에서 평가된 도구를 활용할 것이 권장된다.

아래 질문은 '캠프 관리를 위한 최소기준'<sup>1</sup>의 구조를 따르고 있다. 질문은 상황에 맞게 맥락화해야 하며 다양한 상황 또는 프로그램 목적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 현장 관리 역량 및 식별

### 현장 운영 주기에 따른 계획 수립

- 서로 다른 유형의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실행 계획 개발에 참여했는가?
- 현장 관리를 위한 실행 계획이 장애인의 다양한 요구를 고려하고 있는가? 실행 계획에 합리적 편의(reasonable accommodation)를 필요로 하는 이들을 위한 조치가 포함되어 있는가?
- 실행 계획을 개발할 때 포괄적인 예산 편성 및 물적 자원을 고려했는가? 예를 들어, 설계 단계에서부터 접근 가능성 및 합리적 편의를 위한 예산 항목과 보편적 설계 원칙을 준수하는 물자의 조달을 고려했는가?
- 장애인의 요구가 비상 계획 및 대피 계획에 포함되었는가?

---

1 포괄 관련 기준은 고령·장애 컨소시엄(Age and Disability Consortium)에서 출판한 「노인과 장애인을 포괄하기 위한 인도적 지원 기준(Humanitarian inclusion standards for older people and people with disabilities)(2018)」을 참고한다. (<https://reliefweb.int/report/world/humanitarian-inclusion-standards-older-people-and-people-disabilities>)

## 현장 관리팀의 역량

- 현장 관리팀에 속한 사람이 장애 포괄을 전담하는 담당자로 임명되어 있는가?
- 여성 및 남성 장애인이 현장 관리 기관을 위해 직원, 자원봉사자, 커뮤니티 동원 담당자 등으로 활동하고 있는가?
- 장애인이 현장 관리 업무에 지원하도록 독려되는가? 현장 관리팀에서 활동하는 장애인에게 합리적 편의가 제공되는가?
- 현장 관리팀이 장애인 포괄에 관한 교육을 받았고, 그러한 교육을 통해 배운 내용을 포괄적인 지원 제공에 적용할 수 있는가? SMA 내에서 또는 파트너를 통해 장애 포괄에 관한 기술적인 조언을 얻을 수 있는가?
- 다양한 유형의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인도주의 기관의 시설과 인도적 지원 과정에 접근할 수 있는가?

## 장애인 식별 및 데이터 보호

- 등록 또는 기타 데이터 수집 메커니즘을 통해 장애인이 식별되었는가?
- SMA가 성별, 연령, 장애 여부 등으로 세분화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가?
- 장애인과 관련된 데이터가 정보 관리 주기 동안 충분히 보호되는가?
- 상황상 적절한 경우, 고지에 입각한 동의(아동이나 지적 손상을 가진 장애인 등 직접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승인 의사)가 장애인을 통해 그리고 접근성이 보장되는 방식(예: 읽기 쉬운 형식)으로 수집되는가?

## 커뮤니티 참여 및 대표

### 커뮤니티 참여

- SMA가 수립한 참여 방법론이 장애인을 포괄하는가? 장애인의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할당 되어 있는가?
- 장애인이 프로젝트 주기의 각 단계, 즉 현황 조사, 계획 수립, 이행, 모니터링, 평가 단계에 참여하는가?
- 장애인이 현장 관리팀과 관계를 맺고 자신의 견해와 우려를 보고할 수 있는 접근 가능한 경로가 다양하게 존재하는가?
- 장애인이 현장 관련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회에 대해 만족한다고 보고하는가?
- 여성 장애인이 자신의 견해가 의사결정 과정에 반영된다고 생각하는가?

## 정보 공유 및 의사소통

- 다양한 유형의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각자가 가진 의사소통 관련 필요와 선호에 대해 협의를 진행했는가?
- 현장 내에서 핵심 정보, 교육, 의사소통 자료가 다양한 형식과 수단(예: 큰 글자 인쇄물, 읽기 쉽고 특수 용어가 없는 형식, 그림 문자, 수어, 구두 메시지, 라디오, 영상, 문자 메시지 등)으로 제공 되는가?
- 정보가 다양하고 접근 가능한 장소에서 배포되는가? (예: 안내 데스크, 배포처, 안전한 공간, 보건 의료 시설 등에서 위원회 회의 및 표적집단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또는 가구별 방문 및 커뮤니티 동원 담당자를 통한 배포)
- 서로 다른 유형의 장애인인 그들 자신을 위해 마련된 구체적인 서비스뿐만 아니라 현장에서의 생활, 이용 가능한 전반적인 서비스 및 지원 대상에 포함되고 이에 관한 핵심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모니터링이 체계화되어 있는가?

## 피드백 및 고충

- 피드백과 고충을 다양한 채널(예: 구두, 서면, 전자, 종이, 건의함, 안내 데스크, 핫라인 등)을 통해 접근 가능한 장소에서 접근 가능한 방식으로 수집할 수 있는가?
- 션터에 머무는 사람들이 피드백 및 고충처리 메커니즘에 접근할 수 있는가?
- 피드백과 고충에 대해 조치를 취하고 보고를 할 때, 접근성도 고려하는가?
- 장애인의 피드백 및 고충처리 메커니즘 활용을 모니터링할 방법이 마련되어 있는가? (예: 장애에 관한 워싱턴 그룹 설문지의 간소화 버전을 활용해 성별, 연령, 장애 여부에 따른 데이터를 세분화 등)
- 피드백 및 고충처리 메커니즘을 통해 장애와 관련된 고충(예: 접근성, 합리적 편의의 부적절성, 합리적 편의 제공 요청의 거절 등)을 수집할 수 있는가? 고충에 대한 답변이 시의적절하고 접근 가능하며 충분한 지식에 기반한 방식으로 제공되는가?
- 장애인이 성적 착취 및 학대의 예방(PSEA) 메커니즘에 접근할 수 있는가?

## 거버넌스 구조

- 현장 내에 또는 인근 커뮤니티에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장애인 단체, 자조 집단 또는 커뮤니티 장애 위원회가 존재하는가? 그렇다면 그러한 조직이 현장 인구의 다양성(예: 성별, 연령, 민족성, 장애 여부 등)을 반영하고 있는가?
- 장애인 또는 장애인 대표 기관이 현장 거버넌스 구조 또는 집단에 소속되어 있는가? 그러한 기관이 의미 있는 역할을 수행하는가? 현장 거버넌스 구조 또는 집단에 소속된 장애인 또는

장애인 대표 기관이 성별, 연령, 민족성, 장애 여부 측면에서 현장 거주 인구를 대표하는가?  
장애인이 현장 거버넌스 구조에 의해 또는 그러한 구조를 통해 대표된다고 생각하고 있는가?

- 장애인의 참여를 저해하는 요소나 촉진하는 요소가 식별되었는가? 장애인이 그러한 식별 과정에 관여했는가? 장애인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저해요소와 촉진요소에 관한 현황 조사가 정기적으로 시행되고 있는가?
- 장애인의 참여 및 그러한 참여가 장애인의 삶과 장애인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에 관한 위험 분석(risk assessment)이 ‘해를 끼치지 않음’ 원칙에 따라 시행되었는가? 위험 분석이 정기적으로 시행되고 있는가?
- SMA 또는 파트너가 장애인, 장애인 가족, 장애인 단체의 의미 있는 참여 및 회복력 강화를 위한 교육을 조직했는가?

## 현장 환경

### 안전이 보장되는 환경

- 물리적 기반 시설과 커뮤니티의 행동을 평가하는 관찰 및 안전 감사가 현장에서 정기적으로 시행되는가? 이때 장애를 가진 여성·남성·여아·남아가 처할 수 있는 위험을 고려하는가? 이 과정에서 파악한 위험을 경감하기 위한 전략이 마련되어 있는가?
- 장애인이 안전 위원회에서 대표되는가?
- 현장 거주 인구에게 위험을 알리기 위한 정보 채널에 장애인도 다양한 형식, 여러 장소를 통해 접근할 수 있는가?
- 현장 구축 및 현장 개선이 이루어지는 동안 보편적 설계 원칙을 채택하고 최대한 많은 사람이 현장 및 기반 시설에 대한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조치가 시행되었는가? 그러한 조치가 이동 경로(pathways), 그리고 쉼터, 급수, 공중위생 및 개인위생(WASH), 배포처, 공동 구역, 학교, 보건 의료 시설 등에 대한 접근성을 고려하는가? 또한 현장 거주 인구가 가진 장애(예: 신체적, 심리·사회적, 지적, 감각적 손상 등)의 범위를 고려하는가?
- 현장 운영 주기 동안 장애인, 장애인 가족, 돌봄 제공자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전반적인 현장 구축, 기반 시설, 쉼터, 그리고 WASH 시설과 배포처, 보건 의료 시설, 학교, 공동 구역과 관련해 갖고 있는 접근성 관련 필요와 각종 장벽 및 현장 계획에 대한 기대를 묻고 있는가?
- 접근 가능성과 포괄성에 관한 해당 국가의 법률과 규범 및 기준을 고려하고 존중하는가?
- 시설, 서비스, 지원에 대한 접근성과 관련해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에게 합리적 편의가 제공되는가?
- 장애인이 마주할 수 있는 장벽에 대응하기 위한 합리적 편의 및 현장 개선에 예산이 할당되어

있는가?

- 회의 공간을 포함한 현장 내 모든 환경 또는 일부 환경을 조사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접근성 감사(accessibility audits)가 시행되는가?
- 장애인이 필수 서비스 및 시설에 접근할 수 있는 적당한 거리와 교통수단을 고려하는가?
- 장애 아동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가? 다른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의 교육 및 생계 수단에 대한 접근성이 보장되는가?

## 현장 서비스 조정 및 모니터링

### 현장 조정

- 현장 또는 커뮤니티 내에서 활동하는 장애 중심 기관(예: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또는 전문적인 비정부기구와 장애인 단체 등)이 존재하는가?
- 정신건강 및 심리·사회적 지원, 보호, 아동 보호, GBV 담당 직원 등 현장 수준의 포괄 노력(inclusions efforts)을 노력을 지원하는 기타 전문가들이 존재하는가?
- 적절한 서비스 및 이해관계자들이 식별되고, 매핑되며, 현장 조정에 관여하는가?
- 현장 조정 회의에서 포괄성이 정기적인 의제로 다루어지는가?
- 장애 실무 집단(또는 고령·장애 집단)이 국가 내에서 활성화될 때 현장 관리팀이 그러한 실무 집단의 회의에 참석하는가?
- 장애인과 장애인 위원회가 현장 수준의 이해관계자 회의 등을 통해 집단적 의사결정에 관여하는가? 장애인이 조정 회의에 참여할 수 있는가?
- 분야별 최소 품질 기준을 결정할 때 장애인이 관여하는가?
- 현장 운영 주기 동안 보호 및 지원 활동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모니터링하는 일에 장애인이 관여 하는가?
- 장애인과 함께 그들을 위한 항구적 해결책을 모색하는 옹호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 현장 서비스에 대한 현황 조사, 모니터링, 보고

- 현장 프로파일과 현황 조사 도구가 포괄적인가?(예: 성별, 연령, 장애 여부에 따라 세분화된 데이터를 활용한 장애인 식별, 장애인이 마주하는 위험과 장벽 및 요구의 식별 등)
- 장애인이 서비스 모니터링 및 다분야 현황 조사에 관여하고 그와 관련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가? SMA가 활용하는 설문조사 및 모니터링 도구에 장애인을 위한 구체적인 질문이

마련되어 있는가?

- 장애인이 의미 있는 방식으로 정보에 접근하여 귀환, 통합, 재정착에 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가? 이 과정의 전반에서 서비스의 지속성이 보장되는가? 의사결정을 저해하는 요소가 식별되었는가?

## 연계 경로

- 장애인이 보건 의료 서비스, GBV, 아동 보호, 기타 보호 및 특수 서비스를 위한 중요한 연계 경로에 대해 알고 있는가? 관련 정보가 다양한 형식으로, 접근 가능한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전달되었는가?
- 현장 관리 직원이 중요한(그리고 접근 가능한) 연계 경로에 대해 알고 있으며,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을 포함한 사람들에게 연계 경로에 접근하는 방법을 적절하고 윤리적인 방식으로 안내할 수 있는가?
- 연계에 대한 후속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가?
- 필요할 경우 사례 관리 프로토콜을 파트너들과 공유하는가?
- 장애인을 위한 양질의 전문 서비스를 요구하는 옹호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 장애 위원회가 연계와 관련된 역할을 수행하는가?

## 철수 및 이전

### 새로운 현장 관리 기관으로의 이전

- 이전 또는 양도 계획에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의 지속성이 포함되었는가?
- 이전 과정에 장애인 및 돌봄 제공자가 포함되었으며 그들이 이전 계획에 대한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받았는가?
- 현장 이전으로 인해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이 더 큰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그들의 필요와 요구가 식별되었는가? 서비스에 대한 그들의 접근성이 보장되었는가?
- 새로운 SMA가 장애 포괄을 위한 실천에 관한 교육을 받았는가? SMA가 충분한 역량과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가?

### 현장 폐쇄

- 회의, 표적집단, 기타 수단을 통해 장애인과 현장 폐쇄 관련 협의를 진행했는가?
- 장애인을 위한 적절한 현장 방문 계획이 마련되었는가?



- 가족 및 돌봄제공자와의 분리 위험을 막기 위한 조치를 포함하여 장애인을 위한 적절한 교통수단과 지원이 마련되었는가?
- 인도적 지원 서비스가 갑자기 축소되거나 철회되는 경우에 대비해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차원에서의 비상 계획에 장애인이 고려되었는가?
- 피드백 및 고충처리 메커니즘이 여전히 작동되고 있으며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는가?
- 현장 잔류 인구에 속하는 장애인을 위한 지원 대책이 여전히 마련되어 있는가? 예를 들어, 장애인이 현장에 잔류하는 동안 특별 서비스, 지원, 자조 집단을 이용할 수 있는가?
- 계획되지 않은 현장 폐쇄가 진행되는 경우, 어떤 일이 어떤 이유로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장애인이 정보를 제공받았는가? 이때 이들을 위한 최소 요건(예: 기본 서비스, 교통수단, 숙박에 대한 접근성 등)을 고려했는가?

## 참고문헌 및 추가 자료

- The Alliance for Child Protection in Humanitarian Action, Minimum Standards for Child Protection in Humanitarian Action: 2019 Edition, 2020. ([https://alliancecpha.org/en/CPMS\\_home](https://alliancecpha.org/en/CPMS_home))
- ALNAP. Participation Handbook for Humanitarian Field Workers, 2009. (<https://www.alnap.org/help-library/participation-handbook-for-humanitarian-field-workers>)
- British Red Cross. Community Engagement Hub. (<https://communityengagementhub.org>)
- The Cash Learning Partnership(CaLP), Minimum Requirements for Market Analysis in Emergencies, 2013. ([www.calpnetwork.org/wp-content/uploads/2013/07/minimum-requirements-for-market-analysis-in-emergencies.pdf](http://www.calpnetwork.org/wp-content/uploads/2013/07/minimum-requirements-for-market-analysis-in-emergencies.pdf))
- Global Camp Coordination and Camp Management(CCCM) Cluster. Camp Closure Guidelines, 2014. (<https://cccmcluster.org/resources/camp-closure-guidelines>)
- Global CCCM Cluster. CCCM Case Studies Volume 1, 2014. (<https://cccmcluster.org/resources/cccm-case-studies-vol-1>)
- Global CCCM Cluster. Urban Displacement & Outside of Camp: Desk Review, 2014. (<https://cccmcluster.org/resources/urban-displacement-out-camps-review-udoc>)
- Global CCCM Cluster. CCCM Case Studies Volume 2, 2016. (<https://cccmcluster.org/resources/cccm-case-studies-vol-2>)
- Global CCCM Cluster. CCCM Case Studies 2016-2019 Chapter 3, 2019. (<https://cccmcluster.org/resources/cccm-case-studies-2016-2019-chapter-3>)
- Global CCCM Cluster. Management and Coordination of Collective Settings Through Mobile /<https://cccmcluster.org/resources/management-and-coordination-collective-settings-through-mobile-approach-working-paper>)
- Global Protection Cluster Working Group. Handbook for the Protection of Internally Displaced Persons, 2010. (<https://www.globalprotectioncluster.org/publications/142/policy-and-guidance/guidelines/handbook-protection-internally-displaced-persons>)
- Humanitarian Standards Partnership. Humanitarian inclusion standards for older people and people with disabilities. Key inclusion standards 4, 5 and 6, 2018.(<https://reliefweb.int/report/world/humanitarian-inclusion-standards-older-people-and-people-disabilities>)

- OCHA. Guiding Principles on Internal Displacement, 2004. (<https://reliefweb.int/report/world/guiding-principles-internal-displacement-2004>)
- IASC. IASC Six Core Principles, (<https://psea.interagencystandingcommittee.org/update/iasc-six-core-principles>)
- IASC. Strategy: Protection from and response to Sexual Exploitation and Abuse and Sexual Harassment, 2021. (<https://interagencystandingcommittee.org/iasc-champion-protection-sexual-exploitation-and-abuse-and-sexual-harassment/strategy-protection-and-response-sexual-exploitation-and-abuse-and-sexual-harassment-2021>)
- IASC and Global Protection Cluster. Guidelines for Integrating Gender-Based Violence Interventions in Humanitarian Action: Reducing risk, promoting resilience and aiding recovery, 2015. (<https://interagencystandingcommittee.org/working-group/iasc-guidelines-integrating-gender-based-violence-interventions-humanitarian-action-2015>)
- ICRC. Handbook on Data Protection in Humanitarian Action, 2020. (<https://www.icrc.org/en/data-protection-humanitarian-action-handbook>)
- IOM, Norwegian Refugee Council (NRC) and UN Refugee Agency UNHCR). Camp Management Toolkit. (<https://ccccluster.org/resources/camp-management-toolkit>)
- NRC. Sustainable Settlements: Maximising the social, environmental and economic gains in humanitarian displacement settings, 2017. (<https://reliefweb.int/report/world/sustainable-settlements-maximising-social-environmental-and-economic-gains-humanitarian>)
- NRC. Community Coordination Toolbox, 2020. (<https://cct.nrc.no>)
- NRC. Improving Participation and Protection of Displaced Women and Girls Through Camp Management Approaches, 2020. (<https://ccccluster.org/documents/nrc-report-improving-participation-and-protection-displaced-women-and-girls-through-camp>)
- Overseas Development Institute. Protracted Displacement: Uncertain Paths to Self-reliance in Exile, 2015. (<https://odi.org/en/publications/protracted-displacement-uncertain-paths-to-self-reliance-in-exile/>)
- Oxfam GB. Impact Measurement and Accountability in Emergencies: The Good Enough Guide, 2007. (<https://policy-practice.oxfam.org/resources/impact-measurement-and-accountability-in-emergencies-the-good-enough-guide-115510/>)
- The SEEP Network. Minimum Economic Recovery Standards (3rd edition), 2017. (<https://seepnetwork.org/Resource-Post/Minimum-Economic-Recovery-Standards-Third-Edition-exist-190>)

- Sphere Association. The Sphere Handbook (4th edition), 2018. (<https://spherestandards.org/wp-content/uploads/Sphere-Handbook-2018-EN.pdf>)
- UNHCR. Handbook for the Protection of Internally Displaced Persons, 2010. (<https://www.unhcr.org/uk/protection/idps/4c2355229/handbook-protection-internally-displaced-persons.html?query=Teachers%20of%20Persons%20of%20Concern>)
- UNHCR, IOM. Collective Centre Guidelines, 2010. (<https://reliefweb.int/report/world/collective-centre-guidelines>)
- UN. Convention of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2006. ([www.un.org/development/desa/disabilities/convention-on-the-rights-of-persons-with-disabilities.html](http://www.un.org/development/desa/disabilities/convention-on-the-rights-of-persons-with-disabilities.html))
- UN Security Council. Conflict Related Sexual Violence: Report of the UN Secretary-General. S/2018/250, 2018. ([www.un.org/sexualviolenceinconflict/wp-content/uploads/2019/04/report/s-2019-280/Annual-report-2018.pdf](http://www.un.org/sexualviolenceinconflict/wp-content/uploads/2019/04/report/s-2019-280/Annual-report-2018.pdf))
- Women in Displacement. (<https://womenindisplacement.org>)

# 약어

|       |                      |
|-------|----------------------|
| CHS   | 인도적 지원의 핵심 기준        |
| GBV   | 젠더기반폭력               |
| IASC  | 기관 간 상임위원회           |
| IOM   | 국제이주기구               |
| NGO   | 비정부기구                |
| POLR  | 최후의 수단 제공 기관 (클러스터)  |
| PSEA  | 성적 착취 및 학대의 예방       |
| SEA   | 성적 착취 및 학대           |
| SMA   | 현장 관리 기관             |
| UNHCR | 유엔난민기구               |
| WASH  | 급수, 공중위생 및 개인위생 (분야) |

# 색인

| 용어  | 캠프 관리를 위한<br>최소기준   | 캠프 관리 툴킷   |
|---|---|--|
| 『Sphere 핸드북(The Sphere Handbook)』                           | v, ix, 9, 20, 31, 41, 42, 50, 58                          | 195  |
| 『캠프 관리 툴킷(Camp Management Toolkit)』                         | v, 18, 20, 22, 26, 28, 30, 33, 38, 42, 46, 49, 55, 57, 58 |  |
| Handbook for the protection of internally displaced persons | v   | 18   |
| 거버넌스 구조   | vi, 24, 26, 31, 32, 33, 36, 37, 50, 54, 62, 63            | 37, 47, 49, 64, 76   |
| 계획 수립, 현장 계획 수립   | 39  | 88, 96-98, 103-106, 115, 149, 196, 203, 210, 215, 221, 223, 230, 231   |
| 계획 캠프   | 17, 25, 45, 47, 48  | 22, 25, 32-34, 39, 42, 46-50, 52, 54, 56, 57, 61-64, 66, 72, 107, 111, 115, 118, 121-123, 130-132, 134, 139-141, 144, 145, 147, 148, 151, 153, 159, 178, 180, 183, 186-189, 194, 197, 202-204, 209, 213-215, 220, 221, 227, 229, 232, 237, 247, 258-261, 263, 264, 269, 270, 278, 279, 281 |
| 등록소 및 트랜짓 센터  | 6   | 9, 17, 18, 139, 240  |
| 모니터링  |   | 84, 86, 87, 89, 91, 92   |
| - 2차적인 이재이주   | 52  | 186, 189, 193, 196, 197  |
| - 거버넌스  | 25, 31  | 26, 30   |
| - 고충 및 피드백  | 29  |  |
| - 데이터   | 21  | 22, 74, 77, 80, 161, 166, 221  |
| - 안전 및 안보   | 37  | 125-127  |

|                             |   |  |
|-----------------------------|---|--|
| - 인구 밀도(population density) | 37  | 140  |
| - 지원 및 서비스 제공               | 47, 49  | 24, 30, 118, 156, 157, 162   |
| - 커뮤니티 참여                   | 39  | 27, 48, 134  |
| - 현장 실행 계획                  | 18, 25  |  |
| - 현장 폐쇄                     | 54  |  |
| - 환경적 영향                    | 58  | 84-87, 90, 91, 277   |
| 보호 원칙                       | 8, 9, 14, 20  |  |
| 비공식 현장,<br>자생 캠프도 참고        |   |  |
| 비상 계획                       | 17, 37, 60, 66  | 20, 22, 31, 34, 41, 43, 134, 171, 172, 175-178, 180, 183, 192, 222, 232, 248, 255, 260, 261, 270   |
| 비상 대피 센터                    | 6, 15, 32   | 9, 17, 18, 20, 64, 147, 222  |
| 서비스 제공자                     | 4, 14, 17, 19, 25, 26, 27, 28, 31, 36, 37, 38, 39, 40, 41, 44, 45, 47, 49, 50, 52, 53, 56, 57, 58 | 14, 22, 24-27, 31, 33, 34, 37, 38, 42, 43, 47, 49, 50-53, 55-58, 60-62, 64-66, 72, 74, 77-80, 85, 90, 109, 111, 114, 115, 119, 122, 127, 132, 133, 147, 149, 152, 157, 159, 180, 186, 187-189, 192, 194, 195, 197, 198, 204, 207, 208, 221, 249, 277 |
| - 교육                        |   | 258-261, 263, 264, 267, 269, 270   |
| - 급수, 공중위생 및 개인위생(WASH)     |   | 87, 202-211, 214, 215  |
| - 보건의료                      |   | 163, 209, 236-238, 244, 248, 253, 255, 256, 262  |
| - 재정                        |   | 186, 187, 189  |
| - 성적 착취 및 학대의 예방(PSEA)      | 15, 19, 20, 29  | 33, 42, 152, 193   |

|  |  |  |
|--|--|--|
| 수용 커뮤니티  | viii, 5, 8, 14-18, 26-28, 30-31, 36, 39-41, 45-46, 52, 53, 57-58 | 10, 14, 18, 23-25, 31, 32, 34, 38, 47, 48, 50, 53, 55-58, 60-62, 65, 72, 75, 76, 84-87, 89-92, 96, 97, 99, 101, 102, 105-107, 111, 114-115, 119, 126, 137, 141, 146, 151, 158, 160, 163, 164, 170, 172-174, 177, 181, 183, 188, 197, 203, 204, 206, 211, 215, 220, 221, 223, 224, 226, 232, 246, 253, 254, 260, 262-267, 274-281 |
| 안전 감사  | 37   | 144, 148   |
| 안전 계획  | 36   |  |
| 약어   | 70   |  |
| 유엔난민기구『Handbook for Emergencies』                 |  | 9, 85, 203, 224  |
| 이동식 팀, '지역 기반 접근법'도 참고                           | 6, 16, 27, 40, 42, 48, 67  | 17, 30, 36, 77, 85, 136, 175, 223  |
| 이재민 임시수용시설                                       | 4, 5, 6, 10, 18, 32, 39, 42, 52, 68                              | 9, 16-18, 31, 36, 61, 65, 84, 85, 97, 99, 100, 102, 103, 108, 119, 120, 147-149, 221-227, 230, 231, 258, 265, 270  |
| 인도적 기준 파트너십                                      | v  |  |
| 인도적 지원의 핵심 기준 (Core Humanitarian Standards, CHS) | 8  |  |
| - 고충처리 메커니즘                                      | 25   |  |
| - 의사소통, 참여, 피드백                                  | 25   |  |
| - 적절성 및 연관성                                      | 36, 45   |  |
| - 조정 및 상보성                                       | 45   |  |
| - 직원에 대한 지원 및 대우                                 | 25   |  |
| - 현지 역량 및 부정적 영향                                 | 25   |  |
| - 효과성 및 시의성                                      | 14   |  |



|  |                                  |   |
|--|----------------------------------|---|
| 인도주의 원칙                                | 8, 18                            | 14-15, 24, 32, 35, 50, 63, 181  |
| 인도주의 현장                                | ix, 8, 9                         | 164, 203  |
| 자생 캠프                                  | 4. 5. 26. 40. 42. 48             | 18, 96-98, 115, 221, 243  |
| 재배치                                    | 37, 38, 55, 56                   | 23, 91, 97, 98, 102, 109, 119, 159, 177, 178, 180, 230, 275   |
| 정부                                     | v, 4, 14, 15, 19, 22, 31, 52, 55 | 9, 17, 22, 24, 26, 37-39, 61, 97, 105, 107, 109, 111, 118, 120, 122, 131, 132, 137, 171, 180, 238, 244, 263, 265, 268, 269, 277 |
| - 국가                                   | 4, 36, 54, 55                    |   |
| - 현지                                   | 14, 19, 26, 54, 58               | 36, 51, 62, 97, 109, 246  |
| 조정                                     |                                  | 9, 15, 16, 20-22, 26, 27, 38, 41-43, 97, 241  |
| - IDP 캠프 행정 기구                         |                                  | 23  |
| - WASH                                 |                                  | 87, 88, 202-204, 207, 214, 215  |
| - 교육                                   |                                  | 258, 260-262, 267, 270  |
| - 교육 (training)                        |                                  | 32, 52  |
| - 국가                                   |                                  |   |
| - 난민 모델                                |                                  | 22  |
| - 등록                                   |                                  | 130, 132, 133, 138  |
| -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 인터섹스 (LGBTi) |                                  | 164   |
| - 보건의료                                 |                                  | 236-239, 246, 248, 250, 252, 254, 255   |
| - 보호                                   |                                  | 121-123, 126, 127, 156-159, 164, 165  |
| - 분야별                                  |                                  |   |
| - 빗물                                   |                                  | 88  |

|  |                         |   |
|--|-------------------------|---|
| - 생계   |                         | 274, 275, 279, 280                          |
| - 설사 질환  |                         | 249   |
| - 성적 착취 및 학대의 예방<br>(PSEA)                           |                         |   |
| - 수급 카드  |                         | 132   |
| - 쉼터   |                         | 220-222, 224, 227, 229, 232                 |
| - 식량/비식량 물품  |                         | 187, 188, 196                               |
| - 식량안보   |                         | 189   |
| - 안보 담당자   |                         | 34  |
| - 안전   |                         | 170-172, 174, 180                           |
| - 유엔 민간조정<br>(Civil-Military<br>Coordination, CIMIC) |                         | 35  |
| - 인도지원조정실(OCHA)                                      |                         | 78, 172                                     |
| - 캠프 간(inter-camp)                                   |                         | 24  |
| - 캠프 관리 기관   |                         | 14, 15, 30, 31, 33, 60-68,<br>72-77, 80, 85 |
| - 캠프 위원회   |                         | 50, 51, 55, 56                              |
| - 캠프 폐쇄  |                         | 107, 109, 111, 115                          |
| - 클러스터 조정  |                         | 23, 24                                      |
| - 현장   |                         |   |
| - 현장 계획 및<br>젠더기반폭력(GBV)                             |                         | 146, 148, 149, 151, 152                     |
| - 회의   |                         | 33, 38, 42                                  |
| 지역 기반 접근법  | 5, 6, 8, 26, 40, 41, 44 | 18  |

|  |  |   |
|--|--|---|
| 책무성                                      | vii, ix, 4, 14, 16, 20, 24, 25, 31, 44 | 10, 14, 15, 20-22 24-27, 30, 32, 34, 39, 46, 47, 60-63, 65, 66, 73, 75, 77, 96, 109, 118, 121, 127, 132, 138, 141, 186, 187, 189, 190, 192, 195, 196, 203, 213, 226 |
| 체크리스트                                    |  |   |
| - PSEA                                   |  | 33  |
| - 거버넌스 및 커뮤니티 참여 메커니즘 구축                 |  | 42  |
| - 안전 및 안보                                |  | 183   |
| - 정보 관리( <i>information management</i> ) |  | 80  |
| - 정보 관리( <i>managing information</i> )   |  | 43  |
| - 정보 배포                                  |  | 43  |
| - 조정                                     |  | 68  |
| - 조정, 모니터링 지원, 서비스                       |  | 42  |
| - 직원 채용, 훈련, 지도감독                        |  | 42  |
| - 캠프 기반 시설의 유지관리 보장                      |  | 42  |
| - 커뮤니티 참여                                |  | 42, 57  |
| - 포괄성                                    |  |   |
| - 현장 구축                                  |  | 115   |
| - 현장 폐쇄                                  |  | 115   |
| - 환경                                     |  | 91  |
| 최소 기준                                    | vii, viii, ix, 11                      | 15, 84, 101, 121, 141, 237  |
| - LGBTI                                  |  | 164   |
| - 교육                                     |  | 258-260, 266, 269, 270  |
| - 분야별                                    | 45-46, 47                              |   |

|  |  |   |
|--|--|---|
| - 셉터   |  | 221, 224  |
| - 아동 보호  |  | 121   |
| - 정보 공유 및 데이터 보호                                     | 27   |   |
| 최후의 수단   | 4  | 9, 14, 41, 77, 96, 119  |
| 커뮤니티 참여  | 4, 6, 14, 24, 31, 32, 36, 38, 39, 48                   | 10, 11, 22, 36, 42, 45-58, 64, 131, 149, 172, 176, 211, 213, 224, 258, 260, 270   |
| 특정한 필요를 가진 사람<br>(Persons with Specific Needs, PWSN) | 26, 29, 37, 39, 40, 56                                 | 23, 32, 34, 36, 38, 39, 42, 43, 46, 47, 49, 57, 61, 64, 68, 75, 80, 104, 107, 111, 112, 115, 123, 130, 134, 136, 138, 155-167, 172, 173, 186, 188, 191, 193, 195-198, 205, 214, 215, 224, 226, 232, 236, 239, 243, 244, 253-255, 270, 275-277, 280, 281 |
| 피드백 및 고충   |  | 14, 26, 27, 46, 47  |
| - PSEA   | 15   |   |
| 항구적 해결책  | 4, 10, 45, 48, 64                                      | 14, 19-23, 31, 43, 47, 51, 64, 77, 96, 107, 108, 110, 111, 115, 126, 131, 224, 237  |
| 현장 개발 위원회  | 38, 40   | 101, 103, 107, 115  |
| 현장 관리 실행 계획  | 16, 17, 18   |   |
| 현장 관리팀   | 14, 15, 16, 17, 18, 19, 22, 24, 39, 44, 46, 52, 53, 54 |   |
| 현장 폐쇄  | 52, 54, 55, 56, 57, 58                                 | 10, 14, 19-22, 27, 31, 41, 43, 46, 84, 96, 97, 107, 111, 113-115, 119, 156, 157, 203, 222, 224, 237, 260  |
| - 교육   |  | 263   |
| - 보건의료   |  | 254   |
| 현지 당국  | 4, 8, 15-17, 19, 36, 39, 41, 45, 46, 52, 53, 63        |   |

|  |  |   |
|--|--|---|
| 현황 조사(assessment)                              | 25, 27, 37, 40, 47, 49, 57, 60, 61, 63, 64 | 18, 38, 42, 47, 52, 54, 56, 63, 64, 66, 73, 236, 242, 247 |
| - GBV  |  | 146-148, 150, 153   |
| - WASH   |  | 202-204, 215  |
| - 교육   |  | 121, 258, 259, 263, 268, 270                              |
| - 등록   |  | 131-133, 139  |
| - 보호   | 17   | 42, 123, 125, 126   |
| - 생계   |  | 275-277, 279, 281   |
| - 쉼터 다중 위험요인                                   |  | 223, 229, 230   |
| - 식량 안보  |  | 186, 189, 193, 196, 197                                   |
| - 안전 및 안보                                      | 37   | 57, 171-173, 176, 180, 183                                |
| - 위험   | 17   |   |
| - 집단 수준  |  | 140   |
| - 참여   |  | 27, 49, 50, 51, 57  |
| - 캠프 구축  |  | 101, 102, 104, 107  |
| - 캠프 폐쇄  |  | 109, 114, 115   |
| - 투명성  |  | 57  |
| - 특정한 필요를 가진 사람 (PWSN)                         |  | 156, 157, 161-164, 166                                    |
| - 프로그램 주기                                      |  | 38  |
| - 필요   |  | 22, 23, 68, 74-76, 79                                     |
| - 현장 계획  |  | 104   |
| - 현장 관리 기관 (Camp Management Agencies, CMA)의 역할 |  | 23, 24  |
| - 환경   |  | 84, 86, 87, 89, 91, 92                                    |
| - 보건의료   |  | 237, 238, 239, 251, 254, 255                              |





**MINIMUM  
STANDARDS  
FOR CAMP  
MANAGEMENT**

